

월간  
**재정포럼 8**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1년 8월호 제182호

- 현안분석** • ●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김진수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변화 / 노영훈

- 정책토론투리포트** • ●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 정책흐름** • ●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b>02</b> 고용창출에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 정구정
<b>현안분석</b>	<b>06</b>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 김진수 <b>27</b>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변화 · 노영훈
<b>공공정책포럼</b>	<b>50</b>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b>55</b>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b>정책연구</b>	<b>71</b> 영국 공공기관의 Value For Money 혁신의 경과와 시사점: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b>77</b>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 김진수 외 <b>84</b>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완석 · 정지선 <b>87</b>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 손원익 <b>91</b> 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심태섭 외
<b>주요국 조세동향</b>	<b>94</b> 프랑스의 구글세 도입 계획 철회 외
<b>정책흐름</b>	<b>103</b> 과일 및 채소류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b>105</b>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 <b>109</b>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b>113</b>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b>115</b> 지방세 범칙행위자 처벌 수준 및 절차, 국세 수준으로 정비
<b>재정통계</b>	<b>119</b>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외
<b>이슈 &amp; 포커스</b>	<b>128</b> [시론] 자본에 대한 '따뜻한 과세' 외



## 고용창출에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의 경제 화두(話頭)와 현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로 대변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부머(baby boomer · 1955~1963년생)’ 세대 4가계 중 1가계는 은퇴 후 연금소득이 전혀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된다고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예상되는 은퇴 후의 삶은 고령화시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저소득→저소비→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노령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복지적 차원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고, 다음 세대의 성장동력인 청년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장 절실해 보인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바라보는 소위 ‘착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 즉 ‘고용창출 기업’이 된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예산의 편성과 신규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조세지원제도가 그것이다. 이 중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법인 세납부액이 없거나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추가고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가 선택하여 왔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방안의 마련이다. 지난 2007년 7월 참여정부 시기에 시행되었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는 감면실적 부족(6억원)으로 2007년에 조기 폐지된 사례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고용과 관계없이 제조업 위주의 일부 대기업에 보조금처럼 사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1조 9,418억원 중 87%인 1조 6,970억원이 869개 대기업에 돌아갔다. 대기업 869개는 500만 전체 사업체의 0.02%에 해당하고, 40만 전체 법인의

0.22%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해 중소기업이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겨우 2,448억원으로 13%에 불과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해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까지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고용창출투자공제 한도는 1%로 축소되었다. 문제는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늘어나는 설비투자가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대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8월 중 발표하는 ‘2011년 세제개편안’을 ‘고용연계형’으로 구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내로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고용확대와 연계하여 정비한다고 한다.

세제개편은 통상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주요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비과세나 감면분야를 재검토해 일몰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이러한 세제개편의 목적과 고용창출의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먼저 우리 사회의 고용문제는 곧 청년실업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능력은 결국 다음 세대가 연이어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청년실업이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효율적 고용지원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생산이 확대되어야 하고, 생산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 확대는 처분소득의 증가와 소득분배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 대비 지출비율이 높은 청년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상의 배려가 요망된다.

셋째,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양(+)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지출비용이 노동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조세지출비용은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유수정책에 따른 선순환 구조

.....  
 세제개편은 통상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

.....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발표되는  
 정부의 세계개편안이  
 당초 목표하였던 대로  
 고용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즉 적은 비용으로 거시적인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소기업(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조세지원제도가 되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고용촉진은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올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도 이들에게 집중되었지만,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자는 195만 2천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만 1천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2,187만 7천명으로 3만 4천명이 늘었다. 우리나라의 고용수요를 중소기업이 이끈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또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 단체나 기관에 의해 조세특례제도가 왜곡되거나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섯째,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로 가야 한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요건에 고용요건까지 추가한 것이다. 이 경우 고용을 늘려도 설비투자가 없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가 하면, 결국 매년 평균적인 고용수요 만큼만 세액공제가 되어 추가고용의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에 따라 세액공제의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탄력적 정책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수출은 486억 9천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이어갔지만, 경기회복의 과실이 서민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고용개선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2011년 세계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발표되는 정부의 세계개편안이 당초 목표하였던 대로 고용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변화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jnskim@kipf.re.kr)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 재가동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산업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 서론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은 1990년대 말 정부의 강력한 벤처육성 정책과 코스닥 시장의 가파른 주가상승, 그리고 전 세계의 벤처붐 등에 힘입어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IT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01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와 IT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 벤처산업의 신규투자는 정체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 때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벤처산업의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 재가동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산업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서도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캐피탈은 창업 이후 주식공개에 이르는 초기성장단계/성숙단계의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사업구상 이후 발아단계/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엔젤이 투자한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1997년으로 이미 14년이 지났으며, 또한 한차례의 큰 벤처붐을 경험하면서 벤처캐피탈은 이미 많

\* 본고는 김진수·원종학, 『벤처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2010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주로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엔젤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도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엔젤로서 활동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엔젤투자자 제도가 정착하여 엔젤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엔젤투자자의 의의 및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관련 조세정책을 살펴본다.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등 엔젤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고 오랜 역사와 시행착오를 통해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조세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엔젤(angel)이란  
발아단계/창업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가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개인을  
지칭하며, 개인 또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II. 엔젤투자자의 의의

### 1. 정의

엔젤(angel)<sup>1)</sup>이란 발아단계/창업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가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개인을 지칭하며, 개인 또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그룹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 흔하며, 이러한 엔젤그룹(angel group) 내에서 개인 엔젤은 다른 엔젤과 공동으로 발아단계/창업단계의 회사에 투자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 엔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과 엔젤을 연결해 주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직인 비즈니스 엔젤네트워크(business angel network)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

엔젤은 은행 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차입과 같은 간접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을 받는 대가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과 공통점이 있다. 벤처캐피탈은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하여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자금,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엔젤과 벤처캐피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자금의 원천 측면에서 엔젤은 개인이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반면, 벤처캐피탈은 자신의 자금뿐 아니라 연금, 보험회사, 재단 등의 자금을 투자한다. 둘째, 투자규모 측면에서 엔젤의 투자규모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

1) 엔젤(angel)은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자금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공연에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자 이들을 천사라고 칭한 것에서 유래한 용어임.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가 이와 유사하다고 하여 개인 투자자를 엔젤이라고 부르기 시작함.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주는  
자금조달시스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우 작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엔젤 개인은 일반적으로 10만~5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반면 벤처캐피탈은 일반적으로 200만달러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다. 엔젤 개인의 최대 투자금액 50만달러와 벤처캐피탈 최저 투자금액 200만달러 사이의 공백(gap)을 엔젤그룹(angel group)이 메우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미국에서 엔젤 중에서도 투자규모가 매우 큰 super angel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super angel은 엔젤 중에서도 주로 벤처기업 또는 대기업의 창업자 또는 경영자 출신으로서 그 자신의 사업성공을 통하여 축적한 경영노하우와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에 많은 액수의 투자를 할 뿐 아니라 멘토(mentor)의 역할을 자임하는 개인 투자자를 말한다.

## 2. 엔젤투자 조세지원의 필요성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주는 자금조달시스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엔젤 투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동일하므로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벤처기업의 특성상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높은 자금조달비용은 상품시장에서 대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며, 기술집적 및 고부가 산업이라는 벤처기업의 특징으로 유발되는 외부효과는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게 만드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투자 위험과 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해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면 높은 투자위험과 투자비용을 지원 폭만큼 축소시키게 되어 벤처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셋째, 지식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므로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식기반 경제시대·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대기업보다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되므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리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벤처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 및 안정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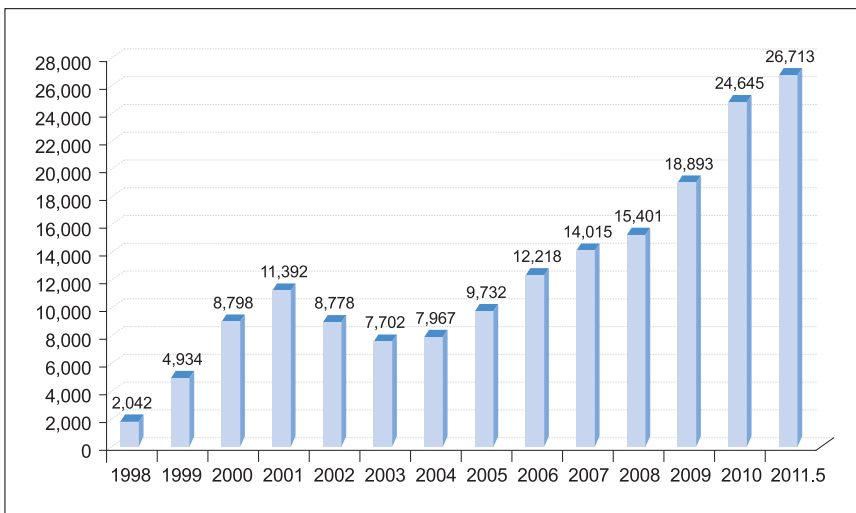
### Ⅲ.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 1. 벤처기업 현황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말 벤처붐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후 벤처붐이 꺼지면서 감소하였다가 2004년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의 수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8년 직후 몇 년동안 벤처붐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여 2001년 1만 1,392개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벤처붐이 꺼지면서 2003년 7,702개로 상당 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후 벤처기업의 수는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 5월 현재 2만 6,713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1990년대 말 벤처붐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후  
벤처붐이 꺼지면서  
감소하였다가  
2004년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 연도별 벤처기업 수



우리나라의 엔젤의 수는 2000년 2만 8,875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784명에 불과하다.

## 2. 엔젤투자 현황

엔젤에 대한 통계는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으로부터 개인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투자자를 엔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개인투자확인서를 발급한 엔젤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엔젤의 수는 2000년 2만 8,875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784명에 불과하다. 또한 엔젤의 투자대상 기업의 수도 2000년에 1,291개였으나, 그 후 2010년 83개에 그치고 있으며 엔젤의 투자금액도 2000년에 5,493억원이었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326억 원에 불과하다.

<표 1> 엔젤투자 현황

(단위: 명, 개,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자수	n.a.	28,875	12,002	4,717	3,964	2,246	2,107	2,727	2,170	1,742	1,243	784
투자기업수	221	1,291	1,007	573	453	194	174	238	220	152	87	83
금액	441	5,493	3,409	1,109	3,031	463	820	971	897	492	346	326

자료: 중소기업청

엔젤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이외에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하거나 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신규로 결성한 조합이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운영조합의 수는 70여개로 정체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2> 개인투자조합 결성현황

(단위: 명, 개, 억원)

연도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조합결성 (신규)	조합수	7	57	7	1	3	2	4	1	3	0	1
	금액	151	361	19	5	16	12	25	4	10	0	1
운영조합	조합수	7	64	71	72	73	74	74	72	72	71	71
	금액	151	463	482	487	436	444	433	421	409	405	406

자료: 중소기업청

엔젤이 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한 현황은 <표 3>과 [그림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하는 전체 조합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개이며 결성금액은 1조 5,938억원이다. 신규결성조합의 출자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은 전체 출자금액의 1.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엔젤이 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2010년 175억원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엔젤이 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2010년 17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표 3> 연도별 창업투자조합 결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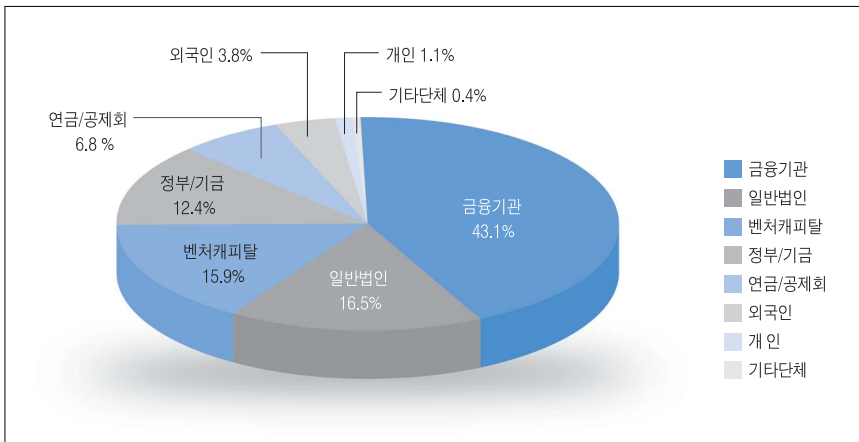
(단위: 개,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합수	39	40	45	48	66	52	74	67
금액	6,586	6,965	8,939	9,037	9,626	11,435	14,109	15,938

자료: 중소기업청

[그림 2] 신규결성조합 출자자 구성비

(단위: 개사)



### 3.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엔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특혜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제도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엔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이다.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함)을 출자 또는 투자시점으로부터 최초의 3개연도 중 1개 년도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④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⑤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⑥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⑦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sup>2)</sup>(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함)

이상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르면 엔젤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한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엔젤이 벤처기업이 아닌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증권시장의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

## IV. 주요국의 엔젤투자 조세지원제도

### 1. 영국

영국은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인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금조달 시스템은 크게 투자방식의 직·간접성 여부와 투자자가 개인 혹은 법인인지에 따라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 Venture Capital Trusts(VCT), Corporate Venturing Scheme(CVS)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EIS와 VCT가 엔젤에 대해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이다.

개인투자자 즉, 엔젤이 적격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EIS제도에 의해 3년 이상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보유 후 주식을 처분하면 자본이득세를 면제받는다. 이때 주식매각손실은 전년도의 과세소득과 상계하거나 처분연도의 다른 자본이득과 상계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엔젤이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VCT제도에 의해 VCT의 신규발행주식에 한해 5년 보유하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본이득세는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면제된다.

영국은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인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표 4〉 영국 벤처투자 관련 자금조달 유형별 조세지원 내용 비교

구분	EIS	VCT	CVS
적용 대상	적격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펀드에 간접투자 하는 개인	적격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
소득공제	3년 보유시, 투자금액의 20%	VCT의 신규발행주식에 한해 5년보유 시, 투자금액의 30%	3년 보유시, 투자금액의 20%
자본이득세 면제	3년 보유후 처분시 면제	최대 20만파운드	-
주식매각손실	전년도의 과세소득과 상계하거나, 처분연도의 다른 자본이득과 상계하는 것 중 선택	-	손실액을 법인투자자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

### 2. 미국

IRC에 규정된 SBIC(중소기업투자회사) 투자자, SSBIC(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 대한 세금우대조항은 엔젤투자에도 적용된다. 첫째,



IRC에 규정된 SBIC(중소기업투자회사) 투자자, SSBIC(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 투자자 및 투자조합에 대한 세금우대조항은 엔젤투자에도 적용된다.

IRC 제 1202조에서는 SBIC 주식에 투자하는 법인 외 투자자 또는 적격 중소기업 발행주식<sup>3)</sup>(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면 실현된 주식매각익의 50%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IRC 제1242조에서는 SBIC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또는 적격 중소기업 발행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개인투자자의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조세지원 이외에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엔젤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젤투자 조세지원책으로서 세액공제제도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정부는 공제 내용상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한도를 설정하거나 건당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3) 적격중소기업 발행주식은 The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3의 시행일 이후 발행된 C-corporation 주식을 말함

〈표 5〉 주정부 엔젤투자 세제지원(예)

지역	프로그램	세액공제율(%)	적용요건	적용 기간	총 공제한도 (주전체)	개인 또는 기업의 공제한도	이월 기간	시행 기간
하와이	High Technology Investment Tax Credit	100%	기업활동의 50% 이상이 연 구하는 기업	5년 (첫해 35%, 이후 25%, 20%, 10%, 10% 적용)	한도 없음	기업의 연간 공제한도는 200 만달러	0	2001~2010
루이지애나	Angel Investor Tax Credit	50%	매출의 50% 이상이 루이지 애나 외 지역인 기업에 투 자한 경우	5년	연간 500만달러	기업은 연간 100만달러, 총액 으로는 200만달러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투자를 받을 수 있음	11년	-
버지니아	Qualified Equity and Subordinated Debt Investments Credit	50%	2009년 이후부터 최근 회 계연도의 법인소득이 300 만달러 미만인면서, 주식발 행 및 대출 등으로 자금조 달규모가 300만달러 미만 인 기업에 투자한 경우	1년	연간 500만달러	만일 주 전체 연간 공제액이 3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은 나머지 가능한 공제 분을 납세자별로 할당	15년	1999. 1. 1.~
뉴욕	Qualified Emerging Technology Companies	투자자가 적격투 자 후 4년간 매 각, 이전 및 처분 하지 않은 경우 10%(9년간 투자 유지한 경우는 20%)	연간 총매출이 1000만달러 미만인면서, QETC가 인정된 신생기술 분야에서 주요한 생산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업 에 투자한 경우	-	총공제한도 없음	① 공제율 10% 적용대상 투자 자의 연간 공제한도는 15만달 러, ② 공제율 20% 적용대상 투자자의 경우는 30만달러	제한 없음	1999~

일본은 적격기업에  
개인이 투자한 경우  
투자시점과 매각시점에서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 3. 일본

일본은 적격기업에 개인이 투자한 경우 투자시점과 매각시점에서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민법조합·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엔젤세제의 대상이 된다. 2008년 이전까지 일본의 엔젤세제는 주식의 매각시점에서의 양도차익 혹은 매각손실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08년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투자시점의 우대조치를 강화하였다.

2008년 이후 엔젤세제는 크게 투자한 연도의 소득세 우대조치와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한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우대조치를 강화하였다.

먼저 투자를 한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우대조치는 A와 B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① 우대조치 A: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이 투자대상인 경우 (대상기업 투자액-2,000엔) 을 그 해의 총소득에서 공제(총소득금액×40%와 1,000만 엔 가운데 적은 쪽이 소득 공제한도)할 수 있도록 함
- ② 우대조치 B: 설립 10년 미만의 기업이 투자대상인 경우 투자액 전액을 그 해의 다른 주식양도액으로부터 공제(투자액 공제한도 없음)할 수 있도록 함

다음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다. 대상 기업의 주식매각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해당연도의 다른 주식양도익과 통산(상쇄)할 수 있다. 만일 해당연도에 모두 통산(상쇄)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익년 이후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주식양도익과 통산(상쇄)할 수가 있다. 또한 2000년 4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투자한 날 익일부터 3년을 지나 해당주식을 보유한 후에 그 주식을 매각할 때는 (대상기업의 주식을 상장 후에 매각한 경우는 상장일부터 3년 이내) 양도익을 1/2로 압축하여 과세한다.

### 4. 정책적 시사점

영국, 미국, 일본 등의 벤처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엔젤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주식매각시 투자이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가마다 소득공제율이나 자본이득세 면제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자본이득세 면제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둘째,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국은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소득 또는 다른 투자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당해 주식의 처분이익에 한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은 과세되지 않는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의 통산이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체제이다.

셋째, 영국에서는 엔젤투자자가 주식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EIS적격 기업의 발행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납세이연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 자본이득세 이연제도가 도입된다면 엔젤투자자는 당장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보다 재투자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벤처기업을 직접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V.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벤처기업을 직접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곧 이어 한차례의 큰 벤처붐을 경험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초기기업은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벤처캐피탈이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공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 순수 민간 벤처캐피탈로서는 투자가 어

특히 제도 측면에서 초기단계에 있는 엔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구상 이후 발아단계/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엔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럽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인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할 자금공급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리는 벤처캐피탈을 대신해서 엔젤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타인자본조달(debt financing)에 비해 자기자본조달(equity financing)이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식이므로 엔젤투자자의 투자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방식으로 더 적합하다.

특히 제도 측면에서 초기단계에 있는 엔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구상 이후 발아단계/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엔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엔젤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엔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엔젤투자자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처분한 매각이익의 재투자시 과세이연율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엔젤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캐피탈이나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이 창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구체적 정책방향

### 가. 전문엔젤투자자제도 및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도입

#### 1) 전문엔젤투자제도의 도입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제Ⅱ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현재와 같은 엔젤투자자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 분별력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성공한 벤처기업인을 엔젤투자자로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젤투자자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은 투자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제지원

을 통해 투자비용을 축소해 주지 않는다면 활발한 투자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엔젤투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엔젤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엔젤투자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해 현행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엔젤의 경우 투자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문엔젤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세지원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 현행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문가 집단 또는 고소득층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전문엔젤투자자 집단에 대해서 더 많은 세제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은 주식시장 장기투자자의 투자자금과 마찬가지로 매우 장기적이면서도, 위험회피적 성향의 주식시장 장기투자자의 투자자금과 달리 위험선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즉,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가 집단 또는 고소득층에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일반엔젤투자자보다는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데 실효성이 더 높을 것이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그대로 두고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한다. 투자자금의 성격이나 조세지원의 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일반엔젤투자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전문엔젤투자자가 우리나라 엔젤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문엔젤투자자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반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도입

엔젤투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엔젤투자자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이 제도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 일반 엔젤과 동일하게 현행의 중소기업창

일반엔젤투자자보다는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데  
실효성이 더 높을  
것이다.

전문엔젤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한 엔젤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행 엔젤에  
대한 지원보다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엔젤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 일반 엔젤과 동일한 현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한다면 새로운 전문엔젤투자자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엔젤의 경우 투자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문엔젤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세지원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엔젤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투자손실과 투자이익의 완전한 통산제도가 우리나라에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엔젤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한 엔젤<sup>4)</sup>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sup>5)</sup>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행 엔젤에 대한 지원보다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엔젤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소득이나 다른 투자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엔젤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은 과세되지 않는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이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체제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엔젤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투자손익 상계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다른 형태의 조세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전문엔젤투자자의 요건(예시)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① 벤처기업 또는 대기업 임원, 금융기관 경력 10년 이상 보유
- ②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심사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
- ③ 최근 2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엔젤투자 경력
- ④ 최근 2년간 연소득 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 10억원 이상 보유

5)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예시)은 다음의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① 창업후 최소 3년 미만의 기업 또는 벤처기업
- ② 기업의 창업자와 투자자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함
- ③ 사치성, 향락 업종은 투자대상 업종에서 제외
- ④ 대기업의 자회사는 투자대상기업에서 제외
- ⑤ 내국법인이어야 하고 비상장기업이어야 함

#### 가) 전문엔젤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전문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보다 다음과 같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행 일반엔젤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10%를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3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일반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소득금액 한도 30%를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50% 한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비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비율과 소득공제한도가 너무 작으면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일반엔젤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 5년을 전문엔

젤투자자에 대해서는 3년으로 축소하여 회수 장기화에 따른 엔젤의 투자기회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현행 일반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3개연도 중 1개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3개 과세연도 모두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득공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일반엔젤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5년을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3년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나) 전문엔젤투자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언제든지 매도하여 수익을 쉽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요건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면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일반엔젤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5년을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3년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나.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 도입

####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세법에서는 의무 보유기간 이후 처분한 매각이익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 보유기간(현행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매각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국의 경우는 개인투자자가 3년 이내의 보유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EIS 적격기업의 발행주식에 재투자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납세이연을 허용한다.

2010년 우리나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도 벤처기업 주식 등에 대한 재투자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었다. 그 내용은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50% 이상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국회의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됨을 감안하여 삭제되었다.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는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은  
2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개선방안

먼저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중복지원인지를 논의해 볼 필요 있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이고,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는 기존의 투자를 또 다른 투자로 연결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문엔젤투자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엔젤 전체로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의 목적은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엔젤투자자가 신생 벤처기업에 수익금을 투자하고 다시 이 벤처기업이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려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전문엔젤투자자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는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은 2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50% 이상 재투자하는 요건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다. 비상장주식 투자손실 이월공제 허용

###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해당 연도에만 통산할 수 있다.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엔젤의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다. 주식의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세제상 그 손실 보상장치가 있어야 엔젤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모두 주식 매각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통산하지 못하고 남은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2) 개선방안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엔젤의 비상장주식 매각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므로 공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월공제 기간을 장기간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월하여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와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의 이월공제제도도 그 적용대상을 전문엔젤투자자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엔젤투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벤처기업 아닌 창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양도소득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비교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라. 창업기업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및 양도소득세 비교세제도 정비

###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세법에서는 벤처캐피탈 및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이 아닌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교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엔젤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교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엔젤은 발아단계 및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게 되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준다면 투자시점에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투자대상기업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 2) 개선방안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시점에 소득공제 여부에 대한 우려 없이, 또한 양도 발생시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아닌 창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양도소득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비교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엔젤의 경우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전문성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자금이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 Ⅶ. 요약 및 결론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나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방법으로는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타인자본 조달방법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자본 조달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자금이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창업 이후 주식공개에 이르는 초기성장단계/성숙단계의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이후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상 이후 발아단계/창업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엔젤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도 성공한 경영자나 벤처창업자가 엔젤로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엔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엔젤투자자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 분별력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엔젤투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엔젤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전문적인 엔젤투자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전문엔젤투자자 제도가 정착하여 이들의 투자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KIP

〈표 6〉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개선방안	
		일반엔젤	전문엔젤
조세혜택대상투자범위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창업기업
소득공제			
소득공제비율	10%	10%	30%
소득공제한도	30%	30%	50%
의무보유기간	5년	5년	3년
양도차익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5년	5년	3년
투자이익 과세이연	불허	불허	허용(최소 2년 보유후 50% 이상 재투자 시 과세이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 이월공제제도	불허	불허	허용(3년)

### <참고문헌>

김진수·김재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김진수·원종학, 『벤처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김진수·한상국·원종학,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이기환, 「엔젤의 투자성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2호, 2003.

經濟産業省, 『エンジェル税制のご案内』, 2010.

經濟産業省關東經濟産業局, 『起業家必見! 創業初期の資金調達術 エンジェル税制活用事例集』, 2010.

British Business Angels Association, *Angel Investment in the UK: An Overview from BBAA*, 2010.

British Business Angels Association, *Business Angel Investing: A Guide to the Legal, Tax & Regulatory Issues*, 2009. 9.

<http://ec.europa.eu/>,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Corpo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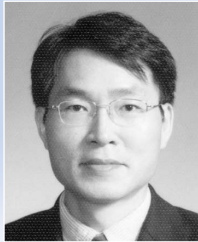
*Venturing Scheme(CVS) and Venture Capital Trusts Scheme (VCT)*, 2009.

Jeffery williams, *Tax Credits and Government Incentives for Angel Investing in Various States*, Angel Capital Education Foundation, 2008.

John Rappa, *State Tax Incentives For Angel Investments*, 2007.

US SBA Data management Branch, *SBIC Program Overview*, 2010.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변화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yhrut@kipf.re.kr)

## 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가 한 나라 경제에 총량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시경제단위별(micro-level) 경제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ed Reserve)는 원래 매 3년마다 수행해 오던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를 2009년 4월에는, 2007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 응답자에 대한 재조사(second interview, reinterview)의 형태로 수행하였다. 즉, 2007년 가계금융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동일한 응답자들을 찾아 이들로 하여금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중대한 경제적 사건을 겪으면서 2009년 한번에 한해 일종의 패널조사를 수행한 셈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 말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1만 표본가구 대상 자산·부채 및 소득·지출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년 동일조사가구들을 선정하여 패널조사하기로 하였다.

세계 및 정부지출 등 모든 공공정책의 변화는 계층별로 상이한 부담 및 수혜를 수반하면서 지난 참여정부 이후 세계개편의 계층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각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득 또는 부와 같은 계층 구분의 (경제학적) 기준에 대한 기초연구는 자료 제약으로 인해 그다지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당들이 ‘서민,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을 표방하지만 이는 공공정책의 존재이유 또는 정의(definition)일 뿐 ‘어떻게’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나라 경제에 총량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시경제단위별 경제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이후 각국은 경기회복 여부 및 출구전략 시점 등 자국의 거시경제(예측)에서, 노동시장의 고용통계와 함께 주택시장동향과 가계부문의 주택자산 보유행태 변화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접근방법론적 측면’에서 각 당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김승권 외(2010)는 표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85.9%가 본인이 서민이라고 답변했으며 20%가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정책이라고 답하고 있다.

노영훈 외(2005)는 우리나라 부와 소득 두 가지 변수기준으로 2×2 결합분포를 최초로 살펴본 연구인데, 한마디로 동일 조사대상 가구를 상대로 연간 수입지출표(소득·지출)와 대차대조표(자산·부채)를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소득기준으로 계층을 나눈 것이고 중산층은 자산(asset)기준으로 계층을 나눈 것인 반면 ‘서민’이라는 표현은 소득과 자산, 심지어 교육 정도나 직업까지도 내포하는 매우 주관적인 계층 구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2010년 가계금융조사가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3개 기관 공동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또는 정부 등 ‘부문별 부채관리’에 대한 해당 정책당국들의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건전성과 가계부채의 적정성 관점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대출비율) 규제에 관심을 가졌고, 주택금융 관련 주택시장대책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개별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적절한 표본설계를 통한 추출을 함으로써 과거 정책당국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정책분석을 수행하는 데 따른 표본편의(Selection Bias) 문제도 피할 수 있었다.

보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한 경제적 충격을 가계라는 관찰단위에서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계의 순재산에서 차지하는 주택자산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가격의 동향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예측에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이후 각국은 경기회복 여부 및 출구전략 시점 등 자국의 거시경제(예측)에서, 노동시장의 고용통계와 함께 주택시장동향과 가계부문의 주택자산(housing equity) 보유행태 변화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계층(예: 소득, 부, 연령, 가구원 등 socio-economic attributes로 차별화된 계층)의 소비·저축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주택시장가격이나 그에 대한 예상이 주거서비스 소비 및 주택투자 수요행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 추가적인 시장가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이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부의 민간소비지출 효과(wealth

effect)가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칭적인지 아니면 비대칭적인가에 대해서도 미시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 및 미국이라는 2국에서의 2시점 간 저량(stock)변수 변화, 또는 2 기간간 유량(flow)변화를 비교해 볼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시점 한국과 미국의 미시자료 수집 조사 차이점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조사의 기준시점 및 기간, 조사의 성격과 방식 측면 등이 있을 수 있다.
- ② 소득분위별 변화 분석 시 소득분위 구분기준 동일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상소득을 이용할 것인지 또는 연간소득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 ③ 표본기구의 가중치 처리문제, 분위나 계층 내에서 중위치(median)을 사용할지 아니면 평균치를 사용할지 등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가 거시총량 측면에서 민간 가계에 엄청난 마이너스효과를 미쳤다는 일관된 지적 때문에, 미 연준은 2007년 조사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 II. 미국의 금융위기 전·후 소비자금융조사 비교

### 1. 미 연방준비이사회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미 연방준비이사회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는 미국 가구의 미시 수준에서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래는 매 3년마다 개인 재무상태에 관한 상세한 질문에 응답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 표본을 새롭게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가 거시총량 측면에서 민간 가계에 엄청난 마이너스효과를 미쳤다는 일관된 지적 때문에, 미 연준은 2007년 조사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재조사(follow-up survey)를 한다면 i) 경제위기가 개별가계에 미친 충격, ii) 그 결과 나타난 금융관련 의사결정 변화, iii) 미국 가계들의 향후 경제 전망 등을 이해하는 데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아직 자료들을 탐구하는(mine) 단계에 있지만, 동 자료를 통해 가구들에 대한 개별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소비자들이 소비지출, 저축, 그리고 재산축적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연준(Fed)의 미국 소비자금융조사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가계에 미친 효과는 한마디로 가계 (보유) 순재산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2009년에는 2007년 소비자금융조사(SCF)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설문(follow-up interview)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는데, 참여자의 개인 사생활 정보는 철저히 보장하면서 참여자에게 개인적 금전문서들, 개인연금계정, 신용카드청구서, 그리고 세무신고서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결과, 2007년 조사참여자의 9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2009년에도 재차 설문(재차 설문)에 응하였다.

## 2. 2007년 소비자금융조사 대비 2009년 재조사 결과 변화 내용

미연준(Fed)의 미국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가계에 미친 효과는 한마디로 가계 (보유) 순재산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2007년 이후 3년 만에 재조사했을 때, 순재산은 중위값 기준으로 12.5만달러에서 9.6만달러로 감소하고, 주식직접투자 평가액은 1.85만달러에서 1.2만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주거주주택은 20.7만달러에서 17.6만달러로 감소하였다. 미연준(Federal Reserve)이 올해 초 발표한 자금순환표(flow-of-funds) 계정상의 총량수치로 가계순재산이 2007년 2사분기에 정점에 달한 후 그 이후 2년간 28% 정도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어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택 및 금융자산에 대한 초기 충격으로 2001년 IT 몰락 이래 실현된 '부의 증가' 대부분을 소멸시켜 "가장 최근의 경기침체가 가계의 순재산에 미친 충격은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엄청난 것"이라고 미연준 Governor인 Elizabeth Duke는 버지니아 경제학회 연설에서 밝혔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가계의 '예비적 저축동기'가 강화되는 등 보다 보수적인 지출행태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보다 많이 저축하고 금전문제에 관련한 위험 회피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가구주의 1/4 정도가 정년퇴임을 2년 정도 연기할 계획이라고 대답하였다. 경기침체를 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한 가구들은 그렇지 못한 가구들보다 더 신중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도 지출을 늘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고, 자산가격이 떨어질 때보다 쉽게 지출을 줄이는 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비대칭성).

또 다른 발견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소득가구들이 (비율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순재산 감소가 있었다. ① 하위 3분위 소득계층 가구의 60%에서 재산 감소가 있었지만, 최고 소득계층가구의 경우에는 71%에서 재산 감소가 있었다. 이는 고소득가구들이 주식 등 자산형태에 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② 가구의 전반적인 재산감소의 2대 요인은 주택가격 하락과 주식지분 하락이었는데, 총자산 중 주거주 주택의 비중은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주식 및 사업지분은 거의 5%포인트 가까이 하락하였다.

③ 양도성예금증서(CD)와 연금자산은 2009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구저축률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에도 시장소득 또는 (조세 및 보조금 지급 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가 한 시점까지 누적적으로 소비하고 남아 저축한 재산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 Ⅲ. 우리나라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가계금융조사 비교

#### 1. 조사의 성격 차이와 자료 한계

2010년 말 통계청은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동 조사는 가구(household)를 관찰단위로 하여 가구원들의 모든 소득 및 소비지출과 같은 유량(flow) 경제활동변수들, 그리고 가구원들의 자산 및 부채 등 저장(stock) 경제활동변수들을 함께 동시에 조사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통계자료라는 중요성을 갖는다. 한 가계의 경제적 입장이나 처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소득이나 소비지출능력과 같은 일정기간 동안의 유량변수뿐만 아니라 한 시점에서 평가한 총자산과 부채를 공제한 순재산도 중요성을 갖는다. 조사대상 표본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자산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는 조세, 의료보험, 연금과 같은 수많은 공공정책에서 요금 및 수혜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소득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에도 시장소득 또는 (조세 및 보조금 지급 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가 한 시점까지 누적적으로 소비하고 남아 저축한 재산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로는 노영훈 외(2005)를 들 수 있다. <표 1>은 2006년 통계청이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여 한 시점에서의 저장(stock) 가치를 최초로 파악한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2008년에 겪은 후 2010년 관찰대상은 다르지만 다시 소득-자산(부채)조사를 한 가계금융조사간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주목할 사항은  
소득 5분위별 부채총액의  
5분위 배율이 2006년의  
5.8배에서 2010년에는  
11.85배로 급증하여  
고소득계층의 차입활동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가계금융조사

분 류	2006년 가계자산조사	2010년 가계금융조사
자산 및 부채 조사 기준시점	2006. 5. 31	2010. 2. 28
소득 및 지출	2005.1.1~12.31 (1년간)	2009.1.1~12.31 (1년간)
모집단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크기 및 주기	9,300가구, 5년	10,000가구, 1년

## 2. 소득분위별 변화

2010년 가계금융조사의 순자산 및 소득분위별 변화의 주요 내용은 소득과 자산을 2차원적으로 결합한 계층별 결합분포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3〉, 〈표 4〉 참조).

① 먼저 순자산 5분위별 가구의 자산보유 규모를 살펴보면, 순자산의 1분위(최하위 20%)와 5분위(최상위 20%) 간의 분위배율은 474배, 총자산에 대한 두 분위 간의 배율은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10분위별 순자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10분위(최상위 10%)가 전체 가계자산의 47.2%를 점유하고 있고, 9분위와 10분위를 합한 상위 5분위(최상위 20%)는 65.1%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순자산 보유의 불평등도와 관련해서는 순재산 지니계수는 0.63을 나타내었다.

② 자산보유규모를 소득 5분위별 살펴보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5억 1,515만원)이 하위 20%인 1분위 소득계층의 순자산(1억 76만원) 대비 5.1배에 달하고, 총자산 기준으로는 5.66배에 달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자산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2010년의 소득별 자산보유규모 분위배율을 2006년 가계자산조사의 분위배율인 4.63(총자산) 및 4.49(순자산) 결과와 비교하면, 소득계층별 자산불평등도는 4년 사이에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절대금액상으로도 소득 1분위 계층에서는 1억 1,571만원보다 순자산이 13% 감소하였고, 최고소득분위에서도 5억 1,913만원에서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고소득분위에서의 절대금액 감소폭은 1% 미만으로 최저소득분위에 비하여 감소폭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사항은 소득 5분위별 부채총액의 5분위 배율이 2006년의 5.8배에서 2010년에는 11.85배로 급증하여 고소득계층의 차입활동(leveraging)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③ 가구당 평균자산총액은 2억 7,268만원, 평균부채액은 4,264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은 2억 661만원으로 가구당 평균자산총액의 75.8%를 차지했으며, 금융자산은 21.4%(5,828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거주주택가격은 1억 1,564만원으로 가구당 평균자산총액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금융부채액은 2,884만원으로 평균부채총액(4,264만원)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그 나머지인 32.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은 2,329만원으로 금융대출의 54.6%를, 신용대출은 10.6%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가계금융조사자료의 대비를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즉, 2006년 조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재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패널자료는 아니지만 소득분위로 cohort를 삼아 살펴볼 수 있다. 그 결과 최저소득 1분위 가구들의 경우는 46개월 정상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였고, 소득 2분위 가구들의 경우는 14.7개월 정상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나머지 중상위소득분위에 해당하는 3, 4, 5분위들은 -1~-1.3개월의 정상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이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순자산 감소에 비하여 작은 충격이 발생했다.

즉, 소득분위 하위 40%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을 받아 순자산액은 -20.5%, -14.9% 감소하였다. 반면 최상위소득계층의 순자산액감소 비율은 작았지만 금융부채나 임대보증금 등 부채증가 비율은 30.5%, 35.7%에 달하였다. 특히 고소득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부동산 관련 부채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부채총액 및 금융부채의 1분위 대비 5분위 비율은 2010년에 급증하였다. 최저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상위소득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소유한 주택자산가액의 하락도 -15.2%, -9.2%에 달하였다.

소득분위 하위 40%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을 받아 순자산액은 -20.5%, -14.9% 감소하였다.

〈표 2〉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 보유규모

(단위: %, 명, 만원)

가구특성	가구분포	가구원수	순자산액	
			평균	중위수
1분위	20	2.2	158	642
2분위	20	2.7	5,132	5,038
3분위	20	3	11,794	11,670
4분위	20	3.3	23,062	22,628
5분위	20	3.4	74,863	52,580
전체	100	2.9	23,005	11,674

주: 통계청 보도자료, 2010년 가계금융조사결과, 2010.

〈표 3〉 소득 5분위별 자산분포(2006년)

(단위: 만원, %)

항 목	전 체	I 분 위	II 분 위	III 분 위	IV 분 위	V 분 위
자산총액	28,112.3	12,996.2	17,936.6	20,187.5	29,264.2	60,171.7
저축총액	5,744.8	2,487.1	3,813.5	4,679.3	6,286.8	11,455.9
	(20.4)	(19.1)	(21.3)	(23.2)	(21.5)	(19.0)
저축액	4,569.8	2,057.0	2,656.1	3,585.6	4,824.1	9,722.2
전월세보증금	1,175.0	544.7	1,041.2	1,044.2	1,457.3	1,786.5
부동산	21,604.1	10,316.4	13,772.7	14,957.1	22,117.5	46,852.7
	(76.8)	(79.4)	(76.8)	(74.1)	(75.6)	(77.9)
주택	12,755.9	5,891.2	7,519.1	9,375.2	14,371.3	26,620.2
주택이외	8,848.2	4,425.2	6,253.6	5,581.9	7,746.2	20,232.5
기타자산	763.5	192.7	350.4	551.1	859.9	1,863.1
	(2.7)	(1.5)	(2.0)	(2.7)	(2.9)	(3.1)
부채총액	3,947.9	1,425.6	2,310.9	3,044.9	4,698.8	8,258.3
부채액	2,881.0	1,006.9	1,726.4	2,308.4	3,590.8	5,771.8
임대보증금	1,066.9	418.7	584.5	736.5	1,108.0	2,486.5
순자산액	24,164.4	11,570.6	15,625.7	17,142.5	24,565.5	51,913.4
표본수	8,275	1,452	1,678	1,680	1,695	1,770
경상소득 평균	3,213.4	832.9	1,876.5	2,804.1	3,826.1	6,723.5
경상소득 중간값	2,800.0	856.0	1,866.0	2,800.0	3,794.0	5,671.0

자료: 전체 가구기준.

〈표 4〉 소득 5분위별 자산분포(2010년)

(단위: 만원, %)

항 목	전 체	I 분 위	II 분 위	III 분 위	IV 분 위	V 분 위
자산총액	27,268.4	10,965.2	14,686.6	19,685.6	28,946.5	62,048.4
저축총액	5,828.3	1,724.1	2,930.7	4,615.6	6,821.7	13,046.8
	(21.4)	(15.7)	(20.0)	(23.4)	(23.6)	(21.0)
저축액	4,089.2	1,071.4	1,727.6	2,849.6	4,496.4	10,299.5
전월세보증금	1,739.0	652.7	1,203.1	1,766.0	2,325.3	2,747.3
부동산	20,661.1	9,133.5	11,411.9	14,458.6	21,239.6	47,054.8
	(75.8)	(83.3)	(77.7)	(73.4)	(73.4)	(75.8)
주택	11,564.2	5,594.3	7,242.2	9,325.1	12,789.3	22,866.7
주택이외	8,916.7	3,524.9	4,152.1	5,071.6	8,305.9	23,525.9
기타자산	779.1	107.6	344.0	611.5	885.2	1,946.7
	(2.9)	(1.0)	(2.3)	(3.1)	(3.1)	(3.1)
부채총액	4,263.5	888.8	2,061.2	3,182.3	4,649.6	10,533.5
부채액	2,883.6	543.4	1,387.7	2,138.1	3,206.4	7,140.8
임대보증금	1,379.9	345.3	673.5	1,044.2	1,443.2	3,392.7
순자산액	23,005.0	10,076.5	12,625.4	16,503.3	24,296.9	51,514.9
표본수	10,000	1,939	1,956	1,972	1,982	2,151
경상소득 평균	3,770.9	678.2	1,810.4	2,998.5	4,544.5	8,821.1
경상소득 중간값	3,000.0	668.0	1,800.0	3,000.0	4,500.0	7,500.0

자료: 전체 가구기준.

가구별 규모나 (경제적) 상황 및 처지(position)와 대비할 수 있는 ‘scale measure’로서 경상소득 또는 통상소득을 사용한 순자산/가구소득 배율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1년치 경상소득 미만의 순재산을 가진 가구비율이 15.5%에서 17.2%로 늘어난 반면, 1년치 경상소득 이상의 순재산을 가진 가구비율은 84.5%에서 82.7%로 줄어들어 경상소득 대비 중간 및 고자산가 계층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도 6] 참조)

### 3. 분포의 집중도 · 불평등도 변화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 10분위(상위 10%) 계층 순자산 점유율은 47.2%로 주요 OECD국가와 비교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06년 가계자산조사 시 0.652 정도에서 2010년 가계금융조사 시 0.654로 별 변동이 없었던 반면, 경상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68에서 0.443으로 불평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포함된 표본가구들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의 합인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것이고<sup>1)</sup> 여기서 공적비소비지출인 세금을 제외하면 가처분소득이 된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상의 전국(1인 및 농가포함)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0.33~0.345의 범위대에 있고,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6~0.314 범위대에 있는데, 본 연구의 0.443은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국가들인 일본, 대만, 중국, 한국의 1인당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를 국제비교한 최근 연구들인 Wang(2011)이나 Solt(2009)를 보면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0.4~0.47의 범위대에서 움직여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부도 1] 참조).

순자산 지니계수는 2006년 가계자산조사 시 0.652 정도에서 2010년 가계금융조사 시 0.654로 별 변동이 없었던 반면, 경상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68에서 0.443으로 불평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5〉 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도 변화

	2006년 가계자산조사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경상소득	0.36819	0.44323
순자산	0.65229	0.65448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각종 정부보조금,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이라 함.

경제위기 과정 중  
부동산미보유 가구가  
오히려 재산가치 유지  
측면에서 타격을 덜 받았다.  
그리고 주택소유가구도  
순자산액 감소가 1.9%에  
그쳐 그리 큰 타격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 4. 부동산 및 주택자산 보유가구의 변화

부동산의 가계자산비중은 2006년의 76.8%에서 2010년 75.8%로 소폭 감소하는데, 주택소유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의 가계자산비중은 81.1%에서 81.9%로 오히려 상승했다. 부동산미보유가구들의 순자산액은 3,143.4만원에서 4,546.2만원으로 44.6% 증가한 반면 부동산소유가구들의 순자산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주택소유가구는 순자산액이 3억 3,222만원에서 3억 2,599만원으로 감소) 전체 가구로는 순자산액이 2억 4,164만원에서 2억 3,005만원으로 4.8% 감소하였다.

전체 표본수 중 표본가구비율은 주택미소유가구 그룹만 4.2%(2006년), 2.9%(2010년)로 적었을 뿐 나머지 부동산소유 대 미소유, 주택소유 그룹들 모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미소유가구의 자산총액 중 전월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50.5%에서 58.8%)뿐만 아니라 절대금액도 55%나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 과정 중 부동산미보유 가구가 오히려 재산가치 유지 측면에서 타격을 덜 받았다. 그리고 주택소유가구도 순자산액 감소가 1.9%에 그쳐 그리 큰 타격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표 6〉, 〈표 7〉 참조).

한편 저소득분위에 비해 3분위 이상 소득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임대보증금 형태의 부채액이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급증하여 중간 및 고소득층의 차입(leveraging)이 전세라는 비공식부문을 통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가구 평균 임대보증금 형태의 부채가 29.3% 상승한 반면 3분위는 41.8%, 4분위는 30.3%, 그리고 5분위는 36.4%나 증가하고 있다(〈표 3〉, 〈표 4〉 참조).

입주형태별 자산보유현황을 나타내는 〈표 8〉과 〈표 9〉를 통해 세입자가구의 재산변화를 살펴보면 전세 세입자의 순자산액은 19.9%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외중에도 전세보증금 형태의 자산이 안전자산이었음을 증명한다.

〈표 6〉 부동산 소유 여부별 자산보유 현황(2006년)

(단위: 만원, %)

항 목	전 체	부동산 소유	주택소유	주택미소유	부동산 미소유
자산총액	28,112.3	37,496.8	38,433.5	23,283.6	4,061.7
저축총액	5,744.8	6,524.7	6,331.9	9,450.2	3,745.8
	(20.4)	(17.4)	(16.5)	(40.6)	(92.2)
저축액	4,569.8	5,691.4	5,752.5	4,764.1	1,695.3
전월세보증금	1,175.0	833.4	579.5	4,686.0	2,050.5
부동산	21,604.1	30,033.9	31,151.2	13,081.3	0.0
	(76.8)	(80.1)	(81.1)	(56.2)	(-)
주택	12,755.9	17,733.1	18,901.9	0.0	0.0
주택이외	8,848.2	12,300.7	12,249.3	13,081.3	0.0
기타자산	763.5	938.1	950.4	752.1	315.9
	(2.7)	(2.5)	(2.5)	(3.2)	(7.8)
부채총액	3,947.9	5,130.0	5,211.3	3,896.6	918.3
부채액	2,881.0	3,646.8	3,649.8	3,602.2	918.3
임대보증금	1,066.9	1,483.2	1,561.5	294.4	0.0
순자산액	24,164.4	32,366.8	33,222.2	19,387.0	3,143.4
표본수	8,275	6,389	6,040	349	1,886
비중	100.0	77.2	73.0	4.2	22.8

〈표 7〉 부동산 소유 여부별 자산보유 현황(2010년)

(단위: 만원, %)

항 목	전 체	부동산 소유	주택소유	주택미소유	부동산 미소유
자산총액	27,268.4	38,477.7	38,590.4	35,956.0	5,402.1
저축총액	5,828.3	6,245.9	6,010.9	11,504.7	5,013.5
	(21.4)	(16.2)	(15.6)	(32.0)	(92.8)
저축액	4,089.2	5,244.9	5,257.6	4,960.6	1,834.9
전월세보증금	1,739.0	1,001.0	753.3	6,544.1	3,178.7
부동산	20,661.1	31,252.5	31,595.4	23,580.0	0.0
	(75.8)	(81.2)	(81.9)	(65.6)	(-)
주택	11,564.2	17,492.4	23,027.2	0.0	0.0
주택이외	8,916.7	13,487.7	13,103.4	22,088.1	0.0
기타자산	779.1	979.3	984.1	871.4	388.6
	(2.9)	(2.5)	(2.6)	(2.4)	(7.2)
부채총액	4,263.5	6,010.2	5,991.1	6,438.8	856.0
부채액	2,883.6	3,923.0	3,870.3	5,102.3	856.0
임대보증금	1,379.9	2,087.3	2,120.8	1,336.6	0.0
순자산액	23,005.0	32,467.5	32,599.3	29,517.2	4,546.2
표본수	10,000	6,694	6,409	285	3,306
비중	100.0	66.9	64.1	2.9	33.1

〈표 8〉 입주형태별 자산보유 현황(2006년)

(단위: 만원, %)

가계금융항목별	전 체	자기집	전 세	월세 등 기타	기 타
자산총액	28,112.3	38,361.2	17,425.1	6,007.1	11,653.0
저축총액	5,744.8	5,830.6	8,357.9	2,495.8	2,619.4
	(20.4)	(15.2)	(48.0)	(41.5)	(22.5)
저축액	4,569.8	5,830.6	3,410.2	1,586.8	2,619.4
전월세보증금	1,175.0	0.0	4,947.7	909.0	0.0
부동산	21,604.1	31,556.3	8,504.9	3,233.6	8,601.0
	(76.8)	(82.3)	(48.8)	(53.8)	(73.8)
주택	12,755.9	18,840.0	4,886.1	1,628.1	3,924.0
주택이외	8,848.2	12,716.2	3,618.8	1,605.5	4,677.0
기타자산	763.5	974.3	562.3	277.7	432.6
	(2.7)	(2.5)	(3.2)	(4.6)	(3.7)
부채총액	3,947.9	4,840.2	3,424.1	1,626.0	1,885.8
부채액	2,881.0	3,606.3	2,207.7	1,365.1	1,223.7
임대보증금	1,066.9	1,233.9	1,216.4	261.0	662.2
순자산액	24,164.4	33,520.9	14,001.0	4,381.1	9,767.2

〈표 9〉 입주형태별 자산보유 현황(2010년)

(단위: 만원, %)

가계금융항목별	전체	자기집	전 세	월세 등 기타	기 타
자산총액	27,268.4	37,532.7	20,960.8	4,815.9	10,287.1
저축총액	5,828.3	5,176.9	11,190.3	2,457.1	2,486.5
	(21.4)	(13.8)	(53.4)	(51.0)	(24.2)
저축액	4,089.2	5,176.9	3,693.3	1,329.9	2,486.5
전월세보증금	1,739.0	0.0	7,497.0	1,127.3	0.0
부동산	20,661.1	31,394.9	9,034.3	2,061.3	7,318.9
	(75.8)	(83.6)	(43.1)	(42.8)	(71.1)
주택	11,564.2	22,608.9	6,026.7	1,056.2	3,753.6
주택이외	8,916.7	8,786.0	3,007.6	1,005.1	3,565.3
기타자산	779.1	961.0	736.2	297.5	481.7
	(2.9)	(2.6)	(3.5)	(6.2)	(4.7)
부채총액	4,263.5	5,218.7	4,179.9	1,536.8	2,800.8
부채액	2,883.6	3,742.9	2,173.8	1,177.5	1,630.4
임대보증금	1,379.9	1,475.7	2,006.1	359.2	1,170.4
순자산액	23,005.0	32,314.1	16,780.9	3,279.2	7,486.2

## 5. 연령별 변화

경제위기 이후 모든 (가구주) 연령대에서 주택자산 비중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되었지만 60세 이상 계층에서 특히 심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총자산의 90~100%를 주택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60대 가구주의 경우 과거 11.6%에서 25%로 급증하는 반면, 동일 연령대 중 무주택가구주의 비중은 2006년의 15.66%에서 2010년의 26.04%로 급증하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퇴연령대 가구들의 자산구성(portfolio)을 살펴보면 주택자산구성비중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들 연령대에서 90~100% 주택자산비중가구와 무주택가구의 양 극단이 늘어나고 중간계층인 80% 미만 주택자산비중가구들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50% 미만 주택자산비중 가구들의 감소가 눈에 띈다.

연령프로파일상 주택소유비율은 50대에 정점에 달했다가 하락하는데, 50대 세대주 주택소유비율이 2006년의 85%에서 69%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60대 이상 세대주의 2006년 84%에서 2010년의 74%로의 감소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감소이다. 이들 가구주 연령계층에 속한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처분했는지 아니면 주택시세 평가액이 감소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경제위기 이후 모든 (가구주) 연령대에서 주택자산 비중의 양극화가 진행되었지만 60세 이상 계층에서 특히 심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10〉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보유 현황(2006년)

(단위: 만원, %)

항 목	전체	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자산총액	28,112.3	5,418.2	18,001.0	30,260.2	37,243.4	32,075.8	29,544.3
저축총액	5,744.8	2,903.8	5,611.3	6,744.3	6,548.4	4,557.4	4,034.9
	(20.4)	(53.6)	(31.2)	(22.3)	(17.6)	(14.2)	(13.7)
저축액	4,569.8	1,350.5	3,647.1	5,313.7	5,875.3	4,081.2	3,562.2
전월세보증금	1,175.0	1,553.3	1,964.2	1,430.6	673.1	476.1	472.7
부동산	21,604.1	2,137.7	11,598.0	22,597.1	29,723.2	27,072.3	25,175.1
	(76.8)	(39.5)	(64.4)	(74.7)	(79.8)	(84.4)	(85.2)
주택	12,755.9	1,673.5	8,602.5	14,345.4	16,470.9	13,934.5	12,769.9
주택이외	8,848.2	464.2	2,995.6	8,251.7	13,252.3	13,137.9	12,405.2
기타자산	763.5	376.8	791.6	918.9	971.8	446.1	334.3
	(2.7)	(7.0)	(4.4)	(3.0)	(2.6)	(1.4)	(1.1)
부채총액	3,947.9	986.5	3,722.7	4,943.4	4,620.0	2,997.2	2,488.5
부채액	2,881.0	901.0	3,000.2	3,763.2	3,257.1	1,781.3	1,462.3
임대보증금	1,066.9	85.5	722.4	1,180.1	1,362.9	1,215.9	1,026.2
순자산액	24,164.4	4,431.7	14,278.3	25,316.9	32,623.4	29,078.6	27,0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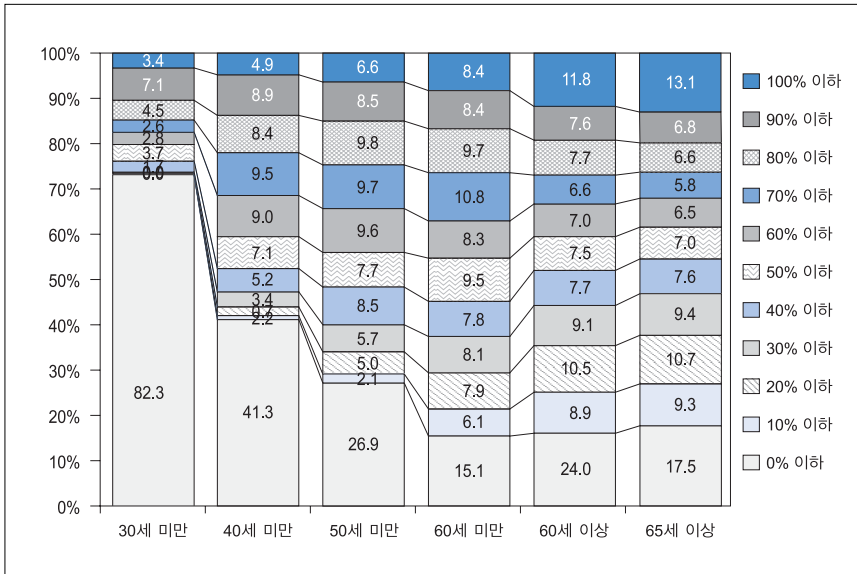
〈표 11〉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보유 현황(2010년)

(단위: 만원, %)

항 목	전체	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자산총액	27,268.4	7,555.6	19,333.4	28,233.4	35,795.6	29,381.2	24,694.1
저축총액	5,828.3	4,209.4	6,379.9	7,275.4	6,695.3	3,806.2	3,122.0
	(21.4)	(55.7)	(33.0)	(25.8)	(18.7)	(13.0)	(12.6)
저축액	4,089.2	1,879.8	3,434.7	4,912.9	5,468.8	3,207.7	2,555.3
전월세보증금	1,739.0	2,329.6	2,945.2	2,362.5	1,226.5	598.5	566.8
부동산	20,661.1	2,809.2	12,099.8	19,961.0	28,131.2	25,138.3	21,275.1
	(75.8)	(37.2)	(62.6)	(70.7)	(78.6)	(85.6)	(86.2)
주택	11,564.2	2,160.4	7,878.6	11,533.1	15,163.0	13,287.6	11,782.1
주택이외	8,916.7	637.0	4,013.5	8,076.0	12,797.5	11,806.0	9,477.3
기타자산	779.1	537.0	853.7	997.1	969.0	436.7	297.0
	(2.9)	(7.1)	(4.4)	(3.5)	(2.7)	(1.5)	(1.2)
부채총액	4,263.5	934.8	3,814.5	5,339.1	5,865.3	3,056.4	2,371.3
부채액	2,883.6	855.8	2,890.1	3,807.3	4,041.6	1,577.1	1,183.4
임대보증금	1,379.9	79.0	924.4	1,531.8	1,823.7	1,479.3	1,187.9
순자산액	23,005.0	6,620.8	15,518.9	22,894.3	29,930.2	26,324.9	22,3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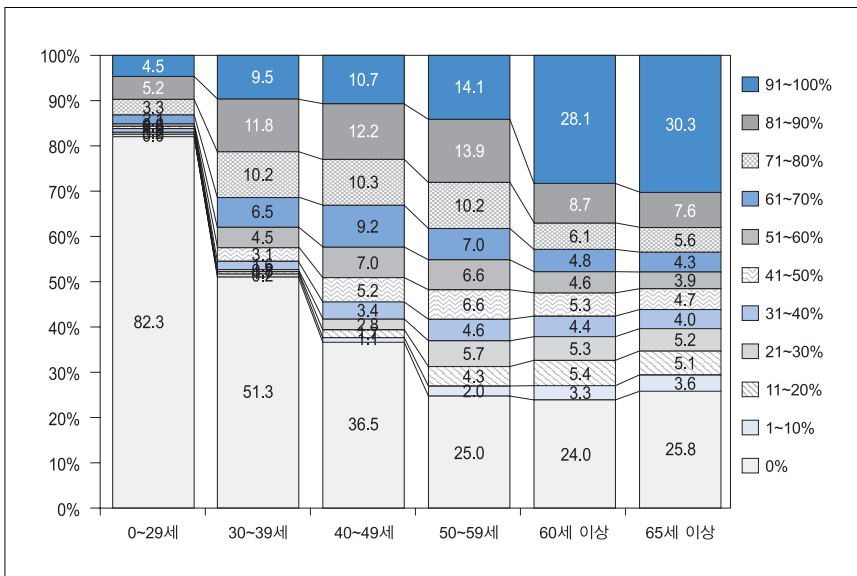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주택자산비중(2006년)

(주택평균가액 / 총자산(%))



[그림 2] 연령대별 주택자산비중(2010년)

(주택평균가액 / 총자산(%))



글로벌 금융위기 및 그 이후의 경기침체는 수입, 소득, 고용 등 유량변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주택자산 등 저장변수도 감소시켰다.

제1차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1963년생으로서 2006년 및 2010년 조사 당시 각각 43~51세 가구주와 47~55세 가구주들로 4년 사이 주택소유가구비중이 76.2%에서 71.2%로 하락하는데, 전체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73%에서 64.1%로의 9%p 하락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세대는 2006년에도 상대적으로 주택소유 비중은 높은 편이었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자산소유비중이 높은 편이며 순자산 감소 측면에서 적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표 12〉 (1차)베이비부머 세대주의 주택소유 변화

(단위: 가구, %)

	2006			2010		
	가구수	비중	전체표본비중	가구수	비중	전체표본비중
주택보유	1,726	76.2	20.9	1,574	71.2	15.7
주택미보유	540	23.8	6.5	638	28.8	6.4
계	2,266	100.0	27.4	2,212	100.0	22.1
전체표본수	8,275		100.0	10,000		100.0

#### IV.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및 그 이후의 경기침체는 수입, 소득, 고용 등 유량변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주택자산 등 저장변수도 감소시켰다. 경기침체의 결과 계층간 소득 및 부의 재분배효과가 발생하였고, 국가별로도 충격이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부문별로 파급효과가 상이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들이 성장 및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도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개별 미시단위 차원에서 한 가계 내의 금융자산 구성 및 주택가격에 미친 효과도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민간가계부문의 순자산에 미친 영향은 한국과 미국 모두 미시가계단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의 패널(panel)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2006년과 2010년의 두 횡단면(cross-sections) 간 비교라는 차이점 및 제약이 있었고, 두 조사 시점 간 시차가 미국의 2년에 비해 3년 9개월로 다소 커서 자료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2006년 가계자산조사 저량변수의 (평가)기준시점은 2006년 2분기이고 2010년 가계금융조사의 기준시점은 2010년 1분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06년 가계자산조사는 금융위기 9분기 전의 조사이고, 2010년 가계금융조사는 금융위기 6분기 후의 조사여서 금융위기 발생시점과는 다소 시차가 존재한다. 결국 미국 연준의 2007년 3분기와 2009년 3분기 비교를 통해 위기 직후부터 (최저점 포함) 8분기 기간들을 대비하여 분석한 것과는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자산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차 조정의 필요성(예, CPI 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기의 징후를 자금순환표(FoF)상의 총량치로 살펴보면 민간가계 부문 수축은 미국보다 1분기 늦은 2007년 3분기부터 시작하여 2008년 4분기에 최저점(trough)에 도달한 후( $\Delta 10.7\%$ )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2010년 가계금융조사 조사기준 시점인 2010년 2월은 이미 상당히 경기회복된 이후 시점이라 할 수 있다(한국은행 개인부문 분기별 순자산 총량기준으로 29.5% 상승).

한국의 가계는 평균적으로 명목금액상 총자산이 감소하고 총부채액은 늘어 순자산액이 명목금액으로 4.8% 감소하였지만, 세분화해보면 몇 가지 특이한 사실들이 발견된다. ① 가계의 가구주 특성 중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인 연령 프로파일(age profile) 상, 40세 미만 가구주를 둔 가구들은 순자산액이 오히려 늘었고, 40대·50대·60대 이상 가구주를 둔 가구의 경우 각각 9.57%, 8.26%, 9.47%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가구주를 둔 가구는 순자산이 17.5% 감소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가구주 연령으로 볼 때 은퇴전 가구(예, 50대 이상)의 자산구성이 주택 및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주택 및 부동산보다 금융상품(예, KOSPI, 펀드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가격하락이 있었다면, 자산구성 변경의 시간적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이들 연령계층에서 순자산 감소가 더 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보유자산 유형 중 부동산자산구성 행태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면 보유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가구당 평균 4.4% 감소하였는데 이 중 거주주택자산의 평균감소율은 9.3% 더 커서 거주주택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에서 42.4%로 감소하였다.

금융위기 전·후의 한국과 미국 주요도시 주택시장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이 충분한 가격하락을 겪지 않고 회복되는 양상을 보

한국의 가계는 평균적으로 명목금액상 총자산이 감소하고 총부채액은 늘어 순자산액이 명목금액으로 4.8% 감소하였지만, 세분화해보면 몇 가지 특이한 사실들이 발견된다.

주택실거래가지수는

- ① 거래된 주택만의 가격동향을 볼 것인지, 아니면
- ② 매매거래를 통해 확인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기준)주택자산의 시장가치 변화를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개선방향 달라진다.

여 2009년 하반기에는 정부가 DTI 등 금융규제를 재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수도권, 전국의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변화를 KB(국민은행) 및 KAB(실거래가)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미국의 S&P/Case-Shiller Index와 보다 기본성격이 비슷한 KAB 지수도 2009년도 3/4분기 중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회복되는 현상이 보인다(<부록> [부도 4, 5] 참조 : 시장매매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KAB지수의 거래량 대비 움직임).

2008년 12월 최저점 도달 후 2009년 2, 3월 이후 시장 규제완화와 감세효과로 주거서비스시장 내 교체수요가 활성화되었다. 2009년 2분기~7, 8월 기간은 서울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회복되어 2006년 11월 전고점 당시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규모도 2009년 2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가계 채무부담능력 악화와 가계부채 부실화가 우려되자, 2009년 7월 7일(LTV), 9월 7일(은행 DTI 규제), 10월 8일(비은행권 DTI 규제) 등 일련의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정책 시행하다가, 2010년 들어 거래둔화와 매매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자 한시적(2011년 3월 말 종료)으로 DTI 규제를 완화하였다.

주택실거래가지수는 ① 거래된 주택만의 가격동향을 볼 것인지, 아니면 ② 매매거래를 통해 확인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기준)주택자산의 시장가치 변화를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개선방향 달라진다. KB가격지수의 하방경직성은 지수작성방법론의 특성에 따라 fluctuation dampening (smoothing) effect를 갖게 되고, KAB지수는 반복매매모형(repeated sales price pair), 동일주택가정(동일단지+면적+층), 가치가중(value weight) 여부 등 지수 작성상의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KIPR

### <참고문헌>

김승권 · 이태진, 『한국인의 서민의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노영훈,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및 충청남도 용역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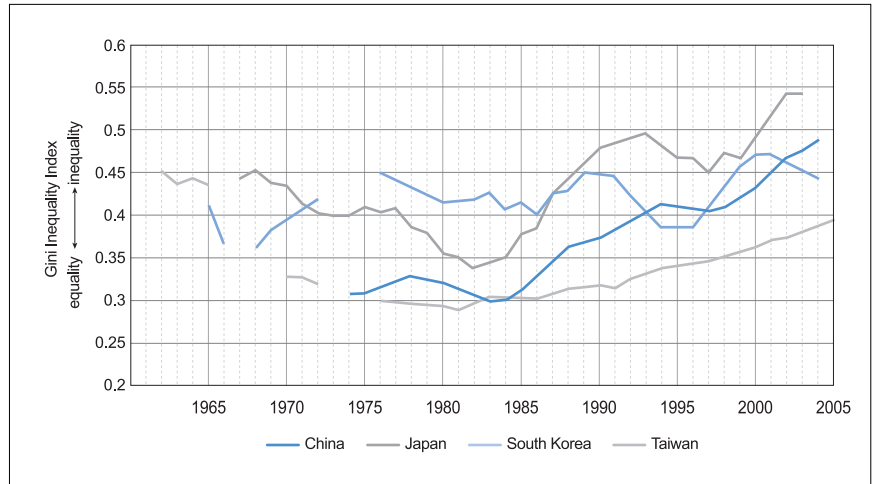
\_\_\_\_\_,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7-09, 2007.

\_\_\_\_\_,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한 국제적 주택시장 동향 분석의 가능성」, 『재정포럼』, No. 162, 한국조세연구원, 2009. 12.

- \_\_\_\_\_,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에 있어서의 입법정책의 문제점」, 『사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0. 3.
- 노영훈·김현숙,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6,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고바야시 마사히로·야수다 유미코, 『서브프라임문제와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주택산업연구원, 2009. 9.
- 통계청, 「2010 가계금융조사결과」 보도자료, 2010.
- Cho, Man, 「Sub-prime Mortgage Market: Rise, Fall, and Lessons for Korea」,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특강자료, 2008.4.
- Eichholtz, P.M.A., Koedijk, C.G., and M. Schweitzer, “Global property investment and the costs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0 (2001), pp. 349~366.
- Frederick Solt, “Standardizing the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cial Science Quarterly* 90, no.2 (2009), pp. 231~242.
- Gurwitt, Rob. 2010 Broke and broken, *Governing* 23 (4), pp. 18~23
- Haveman, Mark and Teri A. Sexton, *Property Tax Assessment Limits: Lessons from 30 years of experience*, Cambridge, MA: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08.
- Shiller, Robert J., *The Subprime Solution: How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Happened,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Significant Features of the Property Tax, Residential Property Tax Relief Programs, 2010.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ersistent fiscal challenges will likely emerge within the next decade, July 18, 2007, GAO-07-1080SP.
- Wang, Feng, “The End of ‘Growth with Equity’? :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East Asia,” *Asia-Pacific issues*, East-West Center, Beijing Univ. June 11,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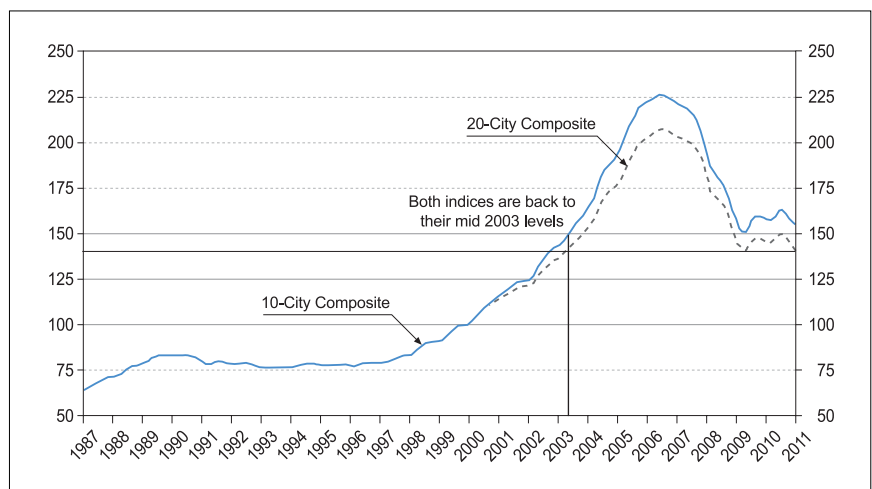
## <부록>

[부도 1] 동아시아 주요국의 소득불균등도 추이(1960-2005)



자료: Wang, Feng, "The End of 'Growth with Equity'? :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East Asia," Asia-Pacific issues, East-West Center, Beijing Univ. June 11, 2011.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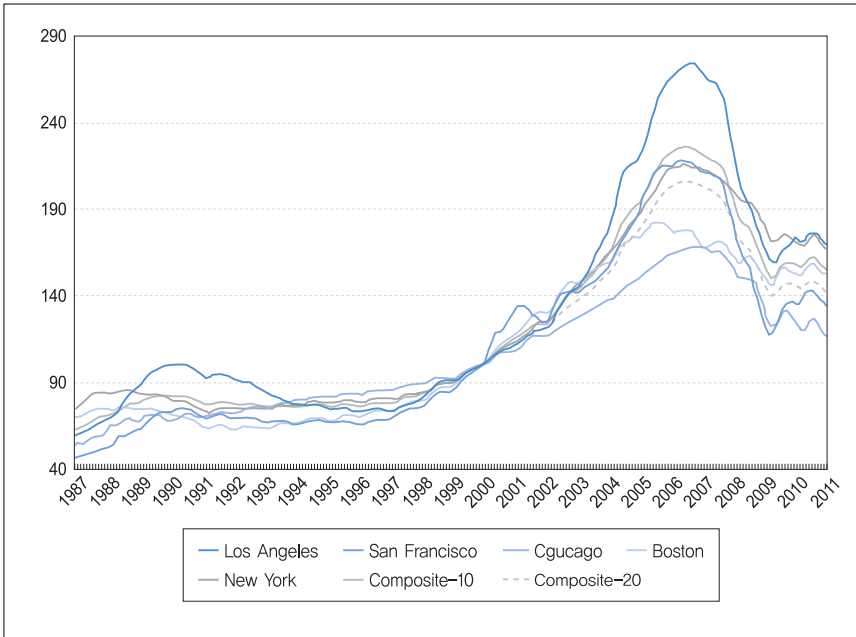
[부도 2] S&P/Case-Shiller 10개 및 20개도시 종합주택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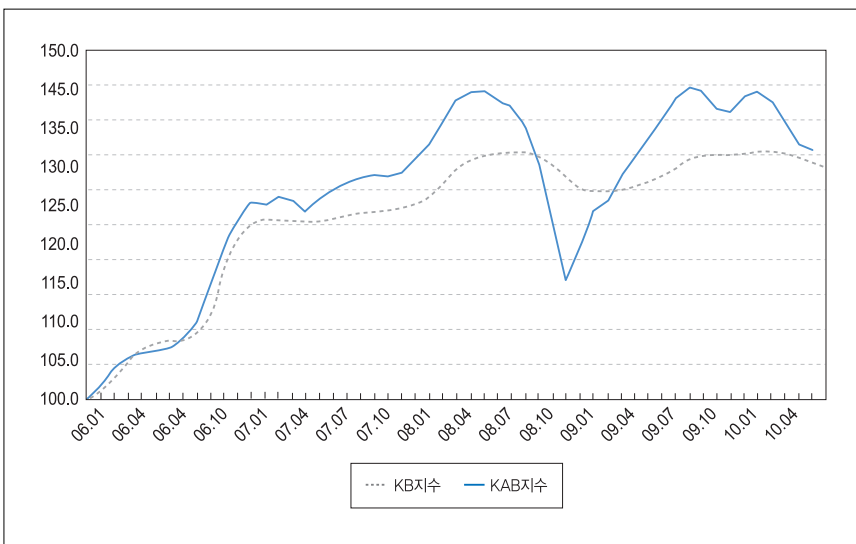
주: 미국 20개도시 복합 주택가격지수는 2006년 여름 정점 대비 최저점에 달했던 2009년 2사분기 32.3% 하락했으며, 10개 도시 복합지수는 33% 하락함.

자료: Standard & Poor's and Fise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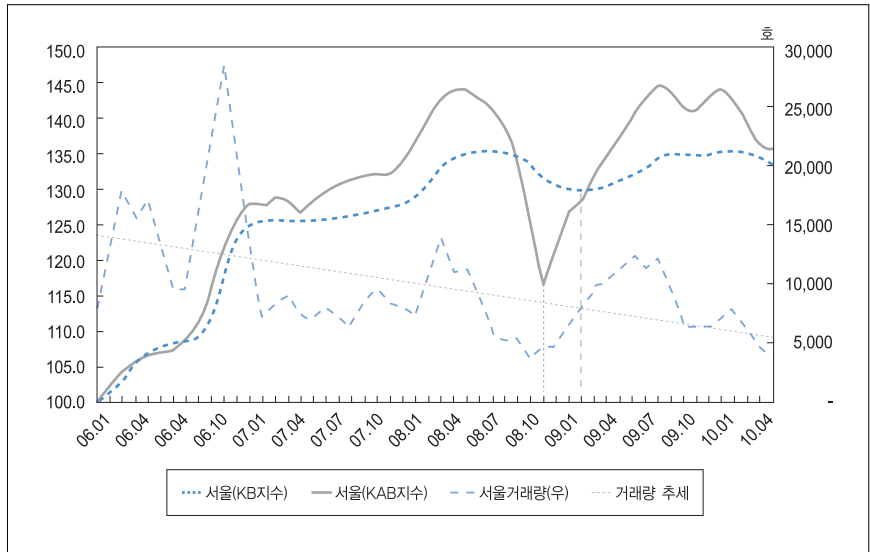
[부도 3] 미국 주요 도시, S&P/Case-Shiller 10개 및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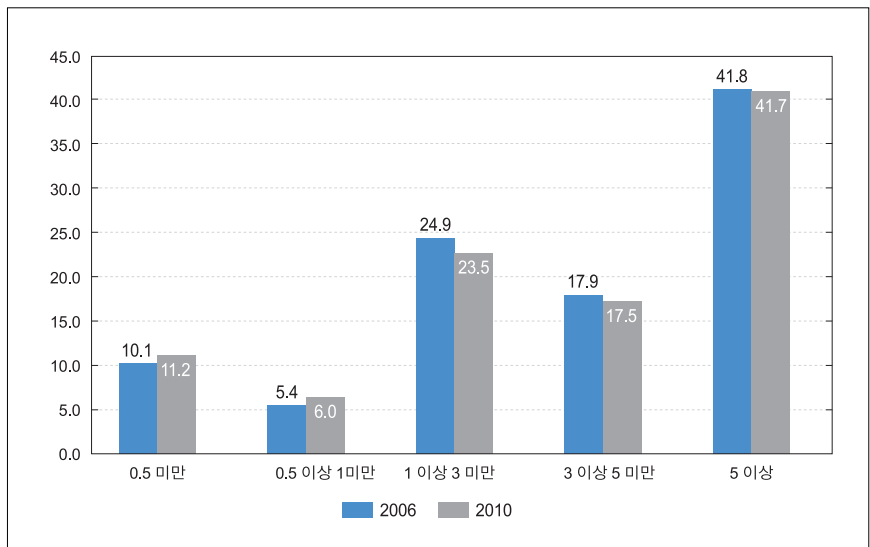
[부도 4] 아파트 KB지수와 KAB지수 비교(서울)



[부도 5] 아파트 KB지수 및 KAB지수와 거래량 비교(서울)



[부도 6] 우리나라 가계의 경상소득대비 순자산액 비율 분포 변화





# 정책토론포럼



-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일 시 2011년 8월 5일(금) 15:00~17:2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5:00~15:1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5:10~17:0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 발 표 자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 토 론 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성철환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17:00~17:2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7:20 폐회

(가나다 순)

\* 본 원고는 2011년 8월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I. 배경**

- 2004년에 도입한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방식은 아니나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음
- 물량 몰아주기는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여(물량을 몰아주는 행위)에 의하여 수혜자의 재산가치(주식가치 등)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행위에 속함
- 이러한 증여행위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대주주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어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비록 상속·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물량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이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수혜기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물량(재화 또는 용역)을 수혜기업에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함

**II. 과세요건**

- 과세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물량을 몰아받은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으로 수혜기업의 지분이 일정 기준(예: 3%~5%) 이상인 대주주(개인)
- 수혜기업의 매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수준(예: 30% 등)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

**III. 구체적인 과세방안**

**(1안)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주식가치 증가분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2안)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3안) 영업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매년 과세)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예: 45%)

**(4안)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납부시 수혜기업의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한 영업이익에 할증세율(예: 3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

(5안)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  
금불산입

- 특수관계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재화·용역 구입비)의 일정 부분(예: 10~20%)에 대해 손금불산입



토론 요약

논리적 해법 제시가 관건

최영태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2004년 포괄주의 도입 당시 자본거래 및 증여거래 위주였고 도입 이후 정상적인 기업행위로 포장한 증여거래가 나타날 조짐이 보였다. 의심액수는 9조 9,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수익률은 약 775%가 넘는다. 얼마나 논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인데, 기업거래를 차용하여 대물림하므로 복잡한 문제이다. 1안 및 2안과 같이 증여과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를 주식양도차액과세로 보완하면 좋을 것이고, 50%까지 올리고 배당으로 간주과세(선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에 대한 이 슈화는 성공했으나 얼마나 논리적인 해법을 내느냐가 과제이다. “우연이득과세”를 신설하여 증여가 아닌 과도한 부의 부당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검토해야

이현석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경제체제·조세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질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는데, 무조건 물량이 많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있다. 주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안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실질과세에 위배된다.

조세안정성·예측가능성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 기업이 추가조작을 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2004년 포괄주의 도입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맞지 않다. 명분은 좋지만 수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말아야 한다.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증여 의미 확대 및 기술적 장치 개발 필요

이전오/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물량 몰아주기 과세 1안에 찬성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은 나중에 결국 다 깎아주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물량 몰아주기도 증여로 볼 수 있도록 증여의 의미를 확대하고 주가 상승분에서 물량 몰아주기가 없었을 때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부의 이전이 되므로 증여과세를 해야 한다. 증여의 정의를 개정하고 전체 주가지수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인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기업도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철학을 갖춰야 하고, 정부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

## 법인세에 과세하는 것이 옳을 것

성철환/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과세에 찬성한다. '몰아주기' 라는 말에 잘못되었다

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4안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이익이 있으므로 법인세에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소액주주도 기업의 부당거래에 동참하는 의미이므로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식에 의한 효율적 과세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기업이 스스로 개선해야 산업생태계가 잘 돌아갈 것이다.

## 정상적 기업활동으로 과세에 반대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과세에 반대한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능력 있는 회사에 물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도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단순 물량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해외 어디에서도 이에 과세하는 사례는 없다. 부당 지원행위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가능한 사안으로, 굳이 세법을 과도하게 개정해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법의 신설보다는 현행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안은 물량 외의 주가상승 요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 부담금 등 다른 정책수단 고려 필요

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대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상증법상 기여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제시된 모든 방안에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방안마다 헌법적 허용성을 검토하여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방안의 단점을 열거할 때 과세대상자나 과세요건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인 면이 있음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각 방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사례를 통해서라도 제시해 주는 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의 경우 시장의 흐름에 따른 평균적인 주가나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부작용을 통제하려는 정책목적은 증여세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향후 증여이익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과세방식에 더 큰 재량이 허용되는 '부담금' 이 다른 정책수단의 좋은 예라고 본다.

그만큼 부가 줄어든 쪽이 있어야 하는데, 줄어든 쪽이 없기 때문에 증여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과세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과세에 반대한다. 불공정 경쟁이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과세 필요성은 인식, 위헌 여부 고려할 터

김형돈/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물량 몰아주기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라고 생각한다. 수혜법인의 매년 이익에 대한 과세도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과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 것인지 고민중이며, 단점들은 위헌성을 잘 따져봐서 노력할 것이다. 8월마다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데, 참고하여 고려하겠다. KIPF

##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증여는 부가 늘어난 쪽과



##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 일 시            2011년 8월 10일(수) 15:00~17: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5:00~15:1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5:10~16:5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발 표 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 ▶ 토 론 자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 정필모    KBS 해설위원
    - 조주현    간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

(가나다 순)

- 16:5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7:00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8월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 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I.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제도를 도입·시행중임
  - 2003년 10·29 대책에 의거 2004년부터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60%(지방소득세 포함시 66%)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시킴<sup>1)</sup>
  - 2005년 8·31 대책에 따라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50%(지방소득세 포함시 55%) 및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0%(지방소득세 포함시 66%)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시킴
  - 또한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됨
-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한 논의 시점부터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과중한 세부담 및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조세정책 방향 전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이론적으로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위축시키기 때문에 가격하락 효과는 미미하거나 가격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음
  - 과도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

효과를 유발하여 실수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시장도 위축시키는 등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음

- 과거 경제여건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납세자 간 과세불공평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옴
- 2008년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는 조세정책들을 정상화하는 요구가 제기되며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에 변화가 일어남
  - 2008년 12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재정위 논의시 향후 2년('09. 1. 1~10. 12. 31) 동안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개정안이 제기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sup>2)</sup>(6%~35%)
    - 1세대 3주택 이상: 45% 단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 배제
- 한편 정부는 2009년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세율을 기본세율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됨
  - 이에 2009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기본

1) 2004년에 추가 취득이 없는 경우 1년 유예를 허용하여 2005.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2) 기본세율이라 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의미함

세율로 조정하여 과세하기로 하였고, 일몰기간이 1차 연장되어 2012년 말까지 유효함

- 투기지역의 경우 '10. 12. 31까지 개인은 '양도세 기본세율+10%p', 법인은 '법인세 기본세율+10%p 추가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일몰기간이 1차 연장되어 2012년 말까지 유효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잠재적인 세부담의 급격한 변화는 납세자 간에 잠재적인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부동산 세제 및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하여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 대신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와 더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상충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됨



## 토론 요약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하고 중과제도 폐지해야

김경환/서강대 국제학부 교수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 사회에서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가 얼마나 적시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의 기원은 1967년에 제정된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세이다. 이후에 1975년부터 건물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로 변천이 되었으나, 처음부터 투기억제가 목적이었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역시 그것을 투기로 본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양도자가 개인인 1세대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본 토론자가 아는 한 어떤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제도이다. 양도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가 양도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집이 몇 채인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나라는 없다. 결국은 맨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의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역으로 1가구 1주택을 장려한다는 정책목표를 지금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자가보유율이 2010년에 61%를 넘어서고 있고, 선진국의 자가보유율이 60~70% 범위에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이 낮은 수준이 아닐 뿐더러 지난 5년 동안 자가보유율은 1% 남짓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진정이 되고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집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계층이 생긴다는 것은 주택의 매입수요는 줄어들고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 면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임대주택의 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결국은 앞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개인투자자, 즉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1가구 다주택 보유를 투기자라고 보는 시각에서 임대사업자라는 시각으로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표자가 제안한 것처럼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부담의 상승을 막아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1가구 다주택에 대해 특별히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1가구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사업자로 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한다면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은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까지는 전세에서 나오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실제로 월 임대료가 안 나오지만 간주임대료 형식으로 과세를 하다가 2002년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과세를 하고 전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다. 물론 제한적으로 금년부터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고 대신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중과세 제도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 대해서 과세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고 과세도 실거래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세 부담이 올라간 상태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원래는 양도세 중과폐지 전면적 개편이 시도되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2년 한시운용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논란 끝에 또 2년 연장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처음에 시작한 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토론에서 발제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하나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동산 세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양도세에 대한 것은 조세원리에 맞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일이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면 나중에 부동산이 과열되면 또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발제문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물론 사람에게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를 거래세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본 토론자는 일종의 슬로건이 실체를 상당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가 보유세를 높이면서 취득등록세 같은 거래세를 완화하면 세수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할 때 모든 국민에 대해 재산보유

과세를 인상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부에 대한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종합부동산세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자본이득세제로서의 본래 모습 나타내야

최원석 /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본 토론의 내용은 납세자연합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본 토론자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혀둔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이라는 정책기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조세제도라는 것은 정부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수입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에 조세를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조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이 요구되기도 한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책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조세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었다. 발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 양도소득세제가 원래 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꼭 그렇다고 하는 긍정적 대답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동 세제가 정책적인 기능, 역할을 부여받다 보니

까 시장상황에 따라서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중과제도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일 때에는 중과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복하여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제도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납세자들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장애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러 가지 예외적인 조항이 도입되다 보니 부동산 양도소득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기본적인 개편방안에서는 양도소득세제에 더 이상 부동산 투기억제라든가 가격안정이라는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는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본래의 조세가 생겨난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간편하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DTI 규제와 같은 금융시장의 규제나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확장하는 정책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지 조세제도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도 그렇게 좋은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래의 자본이득세제로서 양도소득세제가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두 번째로 납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세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조세가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조세가 좋은 조세로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지나치게 세율구조가 높고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과중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브옵티말(sub-

optimal)한 선택을 하게 된다. 적시에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고서 다시 사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팔지 않고 전세를 갖고자 하는, 그래서 전세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도록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납세자의 합리적이고 옵티말(optimal)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이런 조세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개편이 요구된다. 양도소득세제에 이러한 정책기능을 부여하다 보니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개념 정의의 구분이 필요해지고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다양한 예외 규정들이 도입되고 있다. 예외 규정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조차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다 보니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은 복잡한 세법규정을 잘 해석해서 적절한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은 세법의 무지에 의해서 과중한 조세부담을 하는 납세순응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납세자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과제도의 일몰규정을 연장하다 보니 조세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바람에 납세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제의 정책기능을 제거하고 납세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순응비용을 줄이고 조세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조세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당면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최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와 관계 없이 유독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수익이 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하는 분야가 바로 양도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발제자는 양도세의 초기 도입 목적 중에 상당부분 투기억제 목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정부가 양도세를 운영한 것은 투기억제 목적도 있었지만 상당부분은 경기조절의 목적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투기억제와 경기조절을 반복하면서 당초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면 경기조절은 이번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최근 양도세가 이미 감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양도세로의 경기조절 효과는 크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투기억제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었을 때 소위 '타워팰리스'라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을 주는 혜택이 있었다. 지금 양도세 감면이라는 것이 특정 기간에 양도한 사람뿐 아니라 그 기간에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주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경기조절 목적으로 혜택을 줬지만, 본 토론자의 기억에 2004~2005년 경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양도차익을 남겼다는 기사가 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 즉,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택을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도세가 감면받기도 하고, 혹은 양도차익이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형평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에

서 결국 이렇듯 복잡한 납세제도를 얼마나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또 하나 당초에 우리가 왜 양도세를 중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양도차익 자체를 100%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양도차익이라는 것 자체를 거의 100%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여건이 바뀌었다면 세율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목적을 잊은 채로 세율을 낮추라고 주장하면 부유한 사람을 옹호하고, 중과를 강화하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단순한 사회적 인식이 넓게 확산이 되어 있는 것도 양도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로 다뤄지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다.

또한 개인의 다주택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따라서 결국 많은 브로커들이라든가 세제전문가들을 통해서 편법이나 탈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정 부분 주차장으로 변형해서 이용을 한다거나 본연의 토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토지이용 행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건전한 토지이용에 있어서 비용모형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또 하나 고령화사회를 말씀드리면서 완충지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우리나라에서 고령가구들의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다는 게 각종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을 고자산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산은 갖고 있지만 현금을 전혀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이 처분이 안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다. 지금 상속세가 양도세 중과보다 낮은 비율이라 일정부분 탈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토지가 처분이 안 되고 가계의 부동산 자산이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 결국 세

대에 대물림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 부동산 자산 처분에 대한 문제가 결국 앞으로 우리 미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산과 관련된 미국의 여러 가지 논문을 보니까 개인들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주택이나 부동산을 맨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려고 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처분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처분하는가 봤더니 암 진단이나 사망선고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죽어서, 개인적인 큰 변화가 있을 때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 고령가구들이 이러한 요인들로 부동산 자산을 처분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복지재정과는 별도로 노후의 생활자금 같은 것으로 쓸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네 번째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 다시 양도세를 가산하고 있는데 당초에 투기지역을 지정해서 10% 가산한 것은 중과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데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본 토론자가 알고 있는 한 투기지역은 한 번도 해제된 데가 없었다. 강남 3개구 같은 데에는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해제된 적이 없다고 보면 사실은 이것 자체는 당초 투기지역을 지정한 목적과는 달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제해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취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세가 많이 붕괴되고 월세로 넘어가고 있다. 전세제도의 근간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줬을 때는 거의 이

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이 있을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익률에서 임차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즉 전세공급 제도라는 자체가 시장에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지금이라도 완화하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전세라는 것 자체를 없애고 완전히 월세로 돌아선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의 정책기조가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시 여러 가지 비용의 증가 부분을 우려한다고 할 때 전세주택의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임대공급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 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영향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가가 낮은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물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물가불안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몇 년 전에 같은 양도세를 내더라도 오래 보유한 사람에 있어서 깎아 주는 장기특별보유공제 자체를 차등적으로 해 주는 제도가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일괄적인 감가상각이 문제라고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각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주택의 유지관리가 신축주택의 건설보다는 더욱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주택의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이 결국은 임차자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을 유지보수했을 때 비용이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잘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 주택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맞물려서 비용 인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오늘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

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요즘 랜드푸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토지사업에 있어서 수용대상자들이 반드시 다른 대체 토지를 가져야지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고령화도 그렇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용당한 이후에 다른 데 토지를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면 꼭 다른 토지를 사지 않아도 특히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강제수용에 의한 것이라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공공사업장에서 이것에 대한 민원 플랫폼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좀 세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렸다.

## 조세인식 개선을 위한 정상화 필요 시점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본 토론자도 기본적으로 조세를 경기조절이나 가격안정화 또는 거래 활성화와 같은 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주제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안은 조세를 정상화시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일 경기 얘기가 나온다면 이는 정치적으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조세라고 하는 본래 목적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많이 내면서 비난을 받는 나라가 없다. 세금 많이 내면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복지행정도 하고 사회의 좋은 일에 쓰게 되는데 막상 그 돈을

받아쓰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좋은 소리를 안 한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 주택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 땅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물량을 나눠먹는 경우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주택의 경우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토지 또한 공급이 될 수 있는 재화라고 생각한다. 사실 양도소득세가 만들어진 목적도 크게 보면 가격안정화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벌주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벌금으로 인식할 정도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조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 차라리 그런 정도의 징벌적 세금이라면 과징금으로 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으니까 정부가 환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재고의 5~6%에 불과하다. 나머지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전체 가구의 40%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다. 전세금이 상승하면 그것을 조절하고 가격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누가 어떤 임대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등록을 하려고 해도 다섯 채 이상을 가져야만 등록을 하여(수도권)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집을 2~4채, 심지어 1채를 세를 주고 혼자 다른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안 받아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임대시장에서 어떤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임대공식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 규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해서 과세를 정상화한다고 했을 때 임대사업을 할 특별한 혜택이 없어진다고 보면 오히려 양도소득세의 정상화와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예를 들면 임대무기기간이 10년이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 금액이나 규모의 제한들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10년 정도 임대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 당시에 많은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은 임대료로 받는 정상수입과 양도시에 받는 매매차익으로 이루어진다. 매매차익 기대가 클 때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과하게 받지 않는다. 적당히 운용을 해도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정식으로 양성화된 하나의 산업으로 되는 사업에는 대폭 혜택을 줘야 마땅하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공공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의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금을 50~60%이라는 단일세율로 고부과하는 것은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조세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서 50~60%라는 세율로 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다. 조세연구원에서 2009년에 자본차익 과세에 대한 국제연구라는 연구와 2006년도 주간조선 기사들, OECD에서 나오는 부동산 분야의 조세 통계를 보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주택수요가 많아 2~3채 달리지 않고 15%라고 되어 있다. 최고 양도소득세는 영국 18%, 프랑스 최고 27%, 일본은 15%,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없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율의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해외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추

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체 주택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자체적으로 통제를 한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사는 곳을 국가가 다 지불 보장해 준다. 그러나 민간에 맡겨진 시장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히 시장원리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상화 차원에서 바뀌어야 한다.

양도소득세제 관련 규정이 아까 복잡하다고 얘기가 나왔다. 가끔씩 부동산학과 교수니까 자문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 세무사인 제자에게 해답을 찾곤 한다. 조세제도가 복잡하게 되면 결국 세무사만 좋은 일이다.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세는 비교적 단순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인식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토지와 관련된 규정 중 비용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특별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비업무용 토지를 정의할 아주 복잡한 규정이 많이 살아 있다. 이것은 지목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땅의 가치는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나 입지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땅을 사서 이용을 하려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용을 못하게 되면 비업무용이 될 수도 있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잡고 땅을 확보하는 경우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보유를 할 것이다. 그것을 업무/비업무를 구분해서 중과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도 지금과 같이 중과를 폐지하고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투기억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에 관한 한 억제제도가 아직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제

도가 있고, 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있어 계속 현실화되어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보완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신설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중과라고 하는 조세의 큰 틀에서 따로 규정에서 징벌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시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이고, 되도록 정책의 의도보다는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이것이 세금을 두드려 맞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떳떳하지 못하고 벌금처럼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사회는 좋지 않은 사회다. 세금 내는 사람이 칭찬 받고 떳떳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조세정의, 조세인식의 개선을 위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 입장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우선 이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가지고 그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2005년 8월 31일 종합부동산 대책에서 그 결정판이 나왔다. 그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 이제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때 ‘보유세 강화, 공급 연간 30만호, 공급 임대주택 몇 년도 까지 20%...’ 등이 발표

되었는데, 그 종합발표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부속수단으로써 양도세 중과세의 정비방안이 나온 것이다. 그 당시의 목표와 방향은 주택에 대한 국민인식의 전환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주택을 더 이상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성비를 보면 기형적으로 부동산 구성비가 높는데,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낮춰가고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구조로 실현되게 하고,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정책목적에 비춰봐서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서 그 목표와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 합의를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는 게 어려울 거 같으니까 발제문에서 지적인 것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다.

토지와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징에 대해서 발제자는 이것도 하나의 투자자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세제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정책적 합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참여정부 시절 2003년 10·29 대책에서부터 계속 강도를 높여가며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쟁점이 있었다면 이것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시장에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안정시켜야 된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일반 내구소비재와 같은 재화 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대체 투자의 수단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전

제가 있었다. 그러나 도대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게 뭔지, 어떤 이유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고 규정을 하였는지를 짚어줄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모습, 이것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왜곡 내지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시장원리대로 되고 있지 않다. 시장원리대로 되고 있다면 정부가 몇 조원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을 사주면 안 되는 것이다. 어쨌든 시장원리라고 하면 균형가격 형성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수요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하향 안정세로 가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은 정상적인 것이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의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참여정부에서 2004~2006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2003년부터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다 실패했다는 단정들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지금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2008년부터 계속 유예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과 완화해 봤자 마찬가지로 아니냐는 반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징벌적 과세라는 부분이다. 2005년도에 나온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양도세를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했는데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8~20%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택소유 형태가 모기지 대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에 금융비용을 많이 지불한다. 그 보유자가 팔 시점에 하는 양도차익에 금융비용을 감안한다면 20% 최고세율이라는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 당시에 설명을 했다. 영국에도 자본이득세라고 있는데 자산처분 이익의 크기,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두 단계로 누진과세를 하는데 20~40%이다. 우

리도 그렇지만, 사실상 영국과 같은 경우는 거의 실효 세율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40%라는 세율은 굉장히 높은 세율이다. 일본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 투기억제 관련 규제를 왕창 풀었는데도 2003년도 현재에 장기보유주택 기준을 5년 초과한 주택이라고 보고 20%~20%+sur tax로 주민세 6% 그러니까 25% 정도를 부과한다. 5년 미만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 그러니까 40%+12%, 약 50% 정도를 부과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10%p 정도 낮지만 다른나라에서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는 자료가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

최고세율 60%에 대해서 징벌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징벌적이 아닌 세금이 과연 있을까? 종합부동산 대책을 입안했던 당시 재정부 공무원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폭만의 정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두어 들인다는 전제로 여러 가지 제외, 예외조항 기본공제 다하면 거의 거두어 들이는 수준을 60%로 봤다고 한다. 징벌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계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여기의 연장선에서 아까 발제한 내용 중에 실제로 양도차익이 세금 내고 나면 실현되는 차익이 물가상승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장기보유공제 배제에 대해서 결국 불평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 자산의 운용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것을 감안할때 최소한 채권이자 정도의 소득만 누린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의 차이를 무시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세부담의 형평이 저해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과세를 한다는 것

인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부동산 자산운용을 통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발제자는 양도소득세 증가에 대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정책은 우리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른 결과 나왔지만, 그 정책이 사실은 2007년 한 해 정도만 시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정책에 대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자체가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수요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은 정권에 따라 또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양도세 증가 폐지 신중한 접근 필요

정필모 / KBS 해설위원

우선 이런 조세정책이나 금융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가 내지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는 자체가 거시정책의 실패로 인한 총수요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막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증가도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으로써 나왔고, 거기에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들도 기여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 언론에는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분양광고 등과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어떤 면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기는 그런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등장할 한다. 특히 부

동산 시장이 상당히 과열(boom-up)됐을 때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광고와 상당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붐업되면 또 한 쪽에서는 투기적 가수요를 막으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은 이미 총수요 관리는 실패하여 미시적인 정책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사실 언론에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나온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처음부터 시장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굳이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장도 내버려두면 언젠가 꺼지게 마련이다. 거기에 따라서 꺼지는 순간에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기대수익이 높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고 그 리스크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다시는 끼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책당국자들이 그것을 두려워 해 개입하게 된다. 시장원리에 맡겨버리면 경험이 생겨서 부작용이 덜 생기게 된다. 언론이건 정책당국자들이건 학자들이건, 연구원들이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단기적인 것들만 보고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발제자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동결효과를 가지고 부작용을 말씀하였는데 사실은 잠재적인, 추가적인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데는 이 제도가 상당부분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거의 동결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투기가 막 일었을 때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와 같이 투기수요가 상당히 사라진 시점에서는 분명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

또 인구감소 추세라든지, 앞으로 인구구성 측면에

서 보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소위 투기적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시장이 이렇게 붐업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양도소득세 중과의 효과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너무 미시적인 측면을 남발하면 신뢰를 잃어버린다. 폐지를 논의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고 토론을 거친 후에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면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시정 필요

유태현/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발제자는 첫 번째,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 하자는 것과 두 번째, 소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이 배제되고 있는데 그 배제 부분을 시정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첫 번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대한 부분은 시정하자는 것은 동의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장기주택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서울 강남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1967년 11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고, 1968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세가 실시되었는데, 1975년도에 폐지되고 소득세 개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입 이후 양도소득세는 경기상황과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강화와 약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최초 1975년도 도입 당시에는 토지에 50%, 건물에 30% 단일세율로 적용되었다. 1975~1982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되었고, 82년부터 2007년까지는 실거래 과세 개념이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양도세 강화의 경우 80%까지 과세되었다.

양도세는 애초에 정책과세 형태로 출범하였다. 경기과열과 침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양도세의 본질에 대해서는 틀은 소득세이나 역할은 정책과세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지, 거래과세 내지는 정책과세의 성격을 가지는 별도의 세목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가 분명해져야 개편방안이 보다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증과세 폐지에 관한 발제자의 제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양도세의 경우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실증연구에 따를 때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산업생산, 주택건설 실적, 주택가격, DTI, LTV 등이 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나온다. 기존연구를 따를 때 양도세가 이러한 요인들보다는 효과가 작지만, 그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민간경제활동 부분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부의 축적 수단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증과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종합부

동산세의 경우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세대별 합산 과세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관한 부분이 그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애초의 출범 취지가 형해화된 상황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제도 완화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화 내지 폐지에 동의를 하나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완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2008년 11월에 1가구 장기주택보유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을 오래 보유한다는 것은 투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장기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양도소득세제 정상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박명호 / 발제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들과 방청객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양도세 증과와 같이 사후적으로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투기를 방지하는 예방적 조치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의 대상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집을 보유함에 있어서 주거서비스뿐 아니라 향후 기대이익이나



자산의 유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데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발제문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아주 좁은 스코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정책세제로 운용하는 데 대한 비판이 많이 있고 그 부작용이 너무도 많다는 전제하에서 양도소득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과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KIP**



# 공공정책포럼

## ■ 제19회 공공정책포럼

###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영국 공공기관의 Value For Money 혁신의 경과와 시사점: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 제19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영국 공공기관의 Value For Money 혁신의 경과와 시사점  
                      :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 일 시            2011년 7월 22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호텔 로얄볼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前 한국조세연구원장)
  - 08:05~08:45    주제 발표  
                      배준호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교수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7월 22일 서울 팔레호텔 로얄볼룸에서 「영국 공공기관의 Value For Money 혁신의 경과와 시사점: 철도 산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19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영국 철도산업의 Value For Money 평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현재 브라질,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고속철도 건설·운영이 추진되는 한편, 각국의 철도산업 관련 부채 역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 철도산업의 사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건설·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요약

영국 공공기관의 Value For Money 혁신의 경과와 시사점: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배준호/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Value For Money(이하 VFM)는 공적자금 등의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여 의도한 성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것으로 1983년 영국 감사법(National Audit Act)의 제정과 함께 처음 도입되었다. VFM은 경제성·효율성·효과성 측면에서 예산(재정) 지출과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를 보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에는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평가가 별도로 존재하나, VFM을 통해 특정 부처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비정기적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원(NAO)은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VFM 작업을 모니터링함

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감사원의 VFM 연구는 공적회계위원회(PAC) 청문회를 거쳐 하원 보고서로 간행되며, 이에 대해 정부부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VFM은 서비스체계 개선, 지배구조 개선, 재정지출 절약, 효율성 추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NAO)은 예산 1파운드 지출당 10파운드 상당의 재정파급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영국 철도산업은 1994년 개혁을 통해 시설과 운영을 상하분리하는 형식으로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철도 이용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시설·운영비 등 단위비용은 13년 전 수준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체수입 증가율에 비해 정부보조금 증가율이 더 큰 상황이다. 시설 측면에서는 유럽 내 다른 국가의 철도 인프라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열차당 평균 활용률 역시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VFM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 철도산업을 가진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영국의 효율성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아직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VFM의 제도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산업 내 리더십이 약하고 산업 내 기관 간 협조 분위기가 취약하였다는 데 원인이 있다. 또한 막대한 정부보조금의 비효율적 사용, 의사결정시 평가결과 미반영, 낭비적 투자 등도 문제였다.

2011년 Roy McNulty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철도산업에서 VFM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선 정부와 산업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분기화로 인한 거래비용 증대, 산업 핵심주체들의 부적절한 대응, 비효율적이거나 잘못 설정된 유인, 비효율적인 프랜차이즈 운영, 가격시그널을

보내지 못하는 복잡한 요금구조, 우수사례 결여, 인적 자원 및 투자자관리 취약, 복잡한 산업 내 법적·계약 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McNulty가 제시한 효율성 해소 격차 방안은 첫째, 능동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더십 강화 및 소통 확대, 목표 설정, 보조금 평가 강화, 분권화된 의사결정 및 제한된 상하분리 제외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 및 프로젝트 관리 강화, 안전·표준·혁신 중시 및 인적자원과 정보체계 강화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개혁프로그램의 관리 등 독립된 기관을 통한 실행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2018~2019년도에는 약 30%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절감혜택은 요금인상 억제, 조세부담 감소 등의 형태로 승객과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신축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 철도시스템 구축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의 철도산업의 개혁은 영국과 유사한 상하분리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영국 철도산업에서의 VFM 제도 활용이 가지는 영향과 한계점은 우리 철도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기관 관리감독 측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VFM 프로그램의 유효성과 감사원의 역할 등 제도적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비정기적 평가제도로서의 VFM을 우리의 정부경영평가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철도산업이 지난 개혁을 통해 운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해 왔지만, 영국과 같이 국가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현 구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도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반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한 VFM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

기적으로 재정적자 감소, KTX 운행안정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 ■ 자유 토론

김상균/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발표 중 철도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지적하셨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철도청 개혁 당시부터 정부 역할을 대체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른 정부사업 수행 및 투자를 위해 정부 대신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부보조금 비율만 가지고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개혁 당시 민영화 후 수익창출을 위해 투자 감소, 사고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상하분리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VFM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용성/단국대학교 행정학과

VFM 관점에서 영국과 우리 철도산업의 서비스 공급 단가 및 요금체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비교와 마찬가지로 철도 외의 다른 민간 운송수단과의 비교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거리, 동일한 승객 수에 대해 비용을 제외한 순수여객운임수입을 도출하여 공급 단가 측면에서의

VFM을 평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배준호/발표자**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보조율 변화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를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나라 철도시설공단과 같이 정부업무 대행, 시설투자 예정 등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후 철도 서비스 공급 단가 및 운임과 관련한 국가 비교 및 평가와 관련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박영범/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국가마다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상을 일률적으로 비교 및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오늘 주제가 된 영국의 철도산업의 민영화가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심혁윤/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영국의 철도산업 사례는 우리 공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철도개혁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여겨진다. 영국의 경우 너무 세분화된 분리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점이 많다.

일본의 경우 철도개혁 당시 정부가 대신하여 부채를 부담하였다. 운임의 경우 구매력지수로 볼 때 우리는 영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PSO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철도산업에 대한 개혁 및 선진화 정책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배준호/발표자**

발표 중 소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철도산업 개혁은 시행착오 등으로 아직까지 성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와 관련한 시설관리 기관(Network Rail)의 거대화 및 비효율 등도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아 개혁 자체를 실패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고민 역시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의 철도개혁과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영국 철도산업의 리더십 부재 현상 등을 거울 삼아 우리의 철도 건설, 시설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 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 확보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재인/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몇 년 전 교통안전공단에서 VFM 활용사례를 접한 기억이 있는데, 추가 연구를 통해 이러한 국내 사례를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 하에서 VFM 도입을 구체화하려면 지표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철도의 산업 구조와 공공요금의 수익성 및 수익성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배준호/발표자

국내 일부 기관에서 VFM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또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km당 단위비용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사업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VFM 취지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VFM 논의를 통해 공공재원을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영국 감사원의 지적처럼 우리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역시 10원의 자원으로 100원의 재정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연말에 분야별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오는 8월에는 배국환 감사위원을 모시고 감사원에서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월에는 이창우 경영평가단 단장을 모시고 올해 경영평가의 회고와 내년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KIPF**



## 정책연구

-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김진수 · 구자은 · 김태훈 · 송은주 · 정희선 · 기은선
-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완석 · 정지선
-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손원익
- **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태섭 외

#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지은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김태훈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송은주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정희선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기은선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 가. 구조조정세제의 상시화

-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조정세제의 도입 초기인 1990년대 말에는 모든 구조조정세제가 한시적인 조치로서 마련되었음.
- 2001년부터 한시적 구조조정시스템에서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적 상시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일부가 법인세법으로 이관되었음.
- 따라서 현재는 합병 및 분할, 현물출자에 관한 세제 등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상당부분의 구조조정 관련 세제들이 한시적인 조치인 조특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조특법에 의한 제도들은 일몰규정이 적용되고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적용 여부를 판단함.
- 이는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또 다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 따라서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전환되는 구조조정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구조조정세제도 상시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원제도 중 상시제도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과 계속해서 한시적인 조치로 운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근거규정에 대한 국제비교와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세제의 감면 규모를 통하여 상시조치로 전환하여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조직변경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어느 정도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조직만 변경되어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에 과세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활발한 조직변경 활동에 장애가 됨.
- 따라서 조직변경과 같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원방법은 조세감면 형태가 아닌 과세이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국가들에서도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상시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지원방식은 조세감면보다는 과세이연을 함으로써 조직변경 시점에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임.
-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재 조특법에서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정비라고 할 수 있음.
- 국제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 대상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이 많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이 조특법에 명시되어 있고,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특정 업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전문기구에 대한 조세지원 등 매우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음.
-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특법상의 조치 중 일부는 해당 세법으로 이관하고 또 일부는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점차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 중 조세감면이 발생하는 제도의 각 지원별 감면 규모는 <표 IV-9>와 같음.
- 구조조정 지원세제가 대부분 과세시점을 이연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감면이 발생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

악됨.

-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의 조세감면 규모는 매년 0.4억원 규모임.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인한 감면액이 그동안 거의 없었으나 2008년 241억원 규모로 크게 나타남.
- 재무구조개선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모는 2006년 23억원에서 2008년 14억원으로 점차 감소하였음.
- 특이한 사항으로,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면액이 없음을 알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많은 구조조정 실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조특법상 구조조정세제의 활용도는 특정한 거래나 대상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2009년 12월말의 조특법 개정으로 포괄적인 주식이전(교환) 및 자산양도에 대해서 조세특례가 부여됨.
- 위의 규정은 거래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몇 가지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일반규정으로, 낮은 조특법상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활용실적이 저조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경우, 조세지원의 계속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포괄적인 주식이전(교환) 및 자산양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일반규정에 흡수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 조특법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감면규모

(단위: 억원)

유형	조세지원 내용	근거규정	조세감면규모		
			2006	2007	2008 <sup>2)</sup>
현물 출자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0.36	0.4	0.4
사업 전환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33조의2	0	12	3
지주 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0	0	241
중소 기업의 구조 조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2	0	0	0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7조의3			
조직변경 계			0.36	12.4	244.4
채권 채무 조정	재무구조개선 등에 따른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4조	23	16	14
	채무의 인수·변제 대한 과세특례 <sup>1)</sup>	조특법 제39조 ①	N/A	N/A	N/A
자산 양도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sup>1)</sup>	조특법 제34조	N/A	N/A	N/A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법 제43조	1.7	3	3
주식 교환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sup>1)</sup>	조특법 제46조	N/A	N/A	N/A
	감자에 관한 과세특례 <sup>1)</sup>	조특법 제45조	N/A	N/A	N/A
재무구조개선 계			24.7	19	17

주: 조특법에 의한 조세지원 중 조세감면과 관련이 없는 조항은 제외함.

1) 2009. 5. 21. 신설규정임.

2) 잠정치

■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조직변경 및 재무구조개선과 관련된 모든 조세지원제도가 상시규정으로 되어 있음.

•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영국과 호주는 특례조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이 조직만 변경하여 사업이 계속되는 형태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세제가 그러한 조직변경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세이연 등의 조세지원을 유지 하되, 모든 조치는 상시조치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조특법에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는 그동안 감면실적이 없는 즉,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도입 초기보다는 조세지원제도가 많이 정비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복잡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구조조정세제의 전체적인 틀을 고려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유형별 비과세 형식으로 갈 것인지 영국과 같이 거래별 과세특례를 둘 것 인지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세법으로 이관하여 상시조치로 운영하는 것이 상시구조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라 생각됨.

## 나. 조직변경 과세특례의 유형화

### 1) 조직변경의 유형화와 과세특례

■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의 경우, 그 사업과 지분의 연속성이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세효과는 동일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C형 조직재편' 은 합병의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결과가 발생함.

• 따라서, 'C형 조직재편'에 해당될 경우, 당사자 간에는 합병과 동일한 조세특례가 적용됨.

■ 실질상 합병, 혹은 실질상 분할에 해당되는 조직변경은 상법상 합병이나 상법상 분할에 해당되는 조직변경과 그 조세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합병은 자산양수도과 유상증자 후 지분교환의 절차를 거침.

- 현물출자 후 유상증자, 지분의 교환 후 자산의 이전 등은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전체 자산의 전부가 양수도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게 만드는 자산의 양수도는 합병 거래의 효과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분할은 자산의 양수도의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산의 양수도와 유상감자의 절차를 거침.

- 현물출자, (불)균등유상감자 후 자산의 양도 등은 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조직변경의 거래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실질상 합병·분할 거래를 모두 인정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할 경우, 조세회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조직변경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실질상 합병과 실질상 분할 등에 해당되는 거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즉,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음.

■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는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게 유형화되어 세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합병, 분할, 주식인수(교환), 자산인수 등으로 분류됨

• 합병 : 주로 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합병임.

- 자산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합병의 경우, 실질상 합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C형 조직재편'으로 별도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함.

• 분할 : 주로 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합병임.

- 실질상 분할에 해당되는 현물출자의 경우, 일본의 '현물출자'와 같이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함.

• 주식인수(교환) : 주식의 인수나 교환 등으로 인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발생하게 하는 거래.

- 미국의 경우, 'B형 조직재편'에 해당될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됨.

- 일본의 경우, '주식교환', '주식이전'으로 별도로 유형화되며, 완전한 모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가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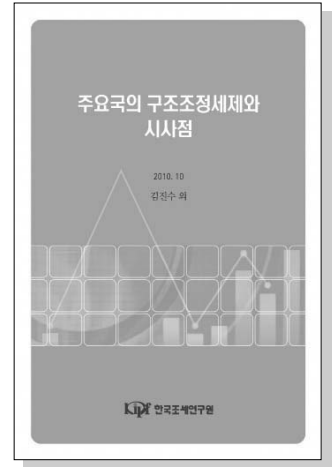
• 자산인수 : 순자산의 이전이 합병이나 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의 하나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함.

• 기타의 유형 :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도록 유형을 추가함.

- 미국의 경우, 기업개선작업이나 자본재구성의 경우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함.

- 일본의 경우, 사후설립 등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함.

- 구조조정세제는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게 유형화되어 동일한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효율적임.
- 한국의 경우,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의 경우만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포괄적 주식이전(교환)과 포괄적 자산양도는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음.
- 일반적인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즉,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세특례를 포괄적으로 적용받는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효율적임.
- 이미,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합병, 분할, 현물출자에 더해 포괄적 주식이전(교환), 포괄적 자산양도를 추가하여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적인 조직변경에 대한 규정과 달리 위기상황하에 있는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추가적이며, 포괄적인 조세혜택이 필요함.
  - 일반적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실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세혜택을 부여하지만,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의 경우에 대한 조세혜택이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규정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위기 기업의 구조조정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B5번호/ 280면  
2010. 10

2) 기업집단 내의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 기업집단 내의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기업집단 내의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일본의 경우, 기업집단 내의 조직변경의 경우, 지배강도에 따라 조직변경 조세특례의 조건을 달리 부여함.
- 영국의 경우, 기업집단 내 이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가 별도로 적용됨.
- 이러한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이유는 기업집단 간의 주식이전은 사실상 내부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경쟁력 향상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업 간에는 조직변경이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배강도를 고려하여 조직변경의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업집단 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분요건뿐만 아니라 종업원승계요건, 사업계

속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정비

##### 1) 재무구조개선 관련 과세특례 규정의 정비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첫 번째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과 그 채권자 간의 채권·채무조정에 관한 조세지원임.
    -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면제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채권자는 채권 포기금액을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두 번째는 채권·채무조정 이외에 기타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에 대한 조세지원임.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나 양도세 분할납부 혜택을 주는 것을 예<sup>1)</sup>로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에 대해 모두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은 대체로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앞 장의 국제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은 채권·채무조정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한 것이 특징임.

■ 부실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과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조세지원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사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것으로 현재는 그 필요성이 이전보다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현행의 조세지원제도는 영구적인 조세감면보다는 과세이연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더라도 기업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 채권·채무조정 관련 과세특례 규정의 일원화와 상시화

- 우리나라는 채권·채무조정의 유형별로 과세특례요건이나 과세특례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규정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일부는 상시규정으로 일부는 한시규정으로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 또한 법률인 경우도 있고 통칙이나 유권해석인 경우도 있는 등 일관성이 부족함.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납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6조 등

자의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법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채권·채무조정 관련 과세특례 규정을 일원화하고, 상시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 재무적 곤경(예를 들면 파산, work-out 등)에 처하면 채무조정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미국과 영국, 일본 모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무적 곤경상황에 대해서만 세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채무조정의 유형별로 과세특례요건이나 내용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44조에 의한 과세이연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 44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3) 채무조정 관련 과세특례의 범위 확대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채권자가 포기한 채권액 중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영국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영구적으로 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세 특례 조항이 과세이연 조항이지 영구적인 과세면제 조항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세제외보다는 과세이연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역시 현재도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과세이연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는 일본처럼 기한 경과 결손금뿐만 아니라 자산평가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의 상계를 허용한다든지, 미국처럼 현재 및 장래의 이월결손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감면혜택과 채무면제이익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임.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완석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지선 / 건양대학교 교수

회사의 도산제도라 함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회사에 대하여 회생이 가능한 경우에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와 회생이 어려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고 처분하는 파산절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도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및 파산법 등의 법률을 1962년에 제정하여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 및 파산절차로 구성된 도산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전까지는 도산사건이 많지 않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도산사건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도산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도산 관련 법률을 몇 차례 개정하였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자 도산법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참여정부의 출범 직후 입법을 추진하여 수정된 제1차 법안을 기초로 이를 일부 수정한 제2차 법안을 2004년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가 제2차 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97개 항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법원과 법무

부 사이에 계속되어 2005년 2월 23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위 수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산절차에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가 있는데, 파산절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재정적으로 파탄하여 그 변제능력으로는 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전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의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추구하는 재판상의 절차이다. 이에 반하여, 회생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의 주된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크게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기업의 도산시 조세채권의 취급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된다.

이러한 도산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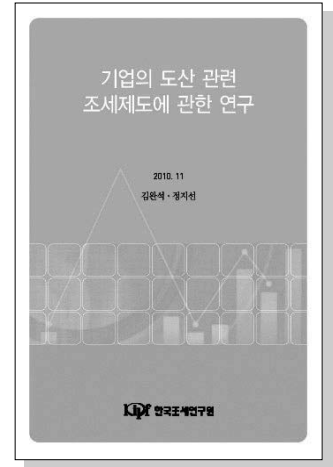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명문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거나, 법인의 경우처럼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과 관련없는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문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법인인 도산기업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당해 회사의 재고 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삭감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기업의 회생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의 경우보다 더 과감한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비금융기관인 채권자의 채권의 경우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병과 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이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항구적인 과세이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도산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B5번형/ 174면  
2010. 11

행해지는 재조직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대가를 배정하는 것을 세법에서 받아들여서 과세이연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결손금의 승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파산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되,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최소한 재단채권의 변제순위와 관련하여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은 조세채권을 비롯한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받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파산절차에 있어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법상 채권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 조항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일곱번째,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일부에 한하여



조세우선권을 고려함으로써 조세우선권과 채권자 평등원칙의 조화를 고려한 현행 입법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산금을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경우에는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도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기업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즉, 조세제도가 기업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 제도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대 예산제도의 특징은 예산제도의 역할이 재정 통제에서 재정사업 등 정책 구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외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외 지출의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는 각종 부담금 성격의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격의 부담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준조세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 즉,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준조세는 예산외의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에 해당하는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준조세의 범위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준조세가 GDP 및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준조세가 법인세수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분석하여 조금 더 미시적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부담규모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산출하였다.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부담금 및 비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사회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합하고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20조 7,167억원에 이른다. 또한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의 총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11조 5,477억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기부한 기부금 중 설문조사 결과 비자발적으로 나타난 비중에 해당하는 준조세성 기부금의 규모는 비자발성의 범위에 따라 943억원 또는 3,573억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32조 3,587억원 또는 32조 6,217억원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협의를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1)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협의로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

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된다. 협의의 준조세 정의를 기준으로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원 또는 3,573억원으로 총 23조 1,932억원 또는 23조 4,562억원에 이르고 있다.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광의는 약 3.04%, 협의는 약 2.1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법인세수의 등락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광의의 경우 2007년 9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수와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 300억원 이상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부금 지출의 비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기부금 지출액 중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였다. 기부금 중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기부금 총액에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른 기부금에 비해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이며, 지출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 특례기부금에서는 2.5%, 지정기부금에서는 1.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비자발성을 '중립적'이라는 응답까지 확대하는 경우, 비자발성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18.2%, 특례기부금은 12.2%, 지정기부금은 11.3%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기부금의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를 보

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다소 강제적' 이상으로 할 경우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6.1%, 6.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립적'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의 경우 20.0%, 금융업의 경우 19.6%로 제조업 10.0%, 도소매업 12.5%에 비해 비자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부금의 자발성을 법인규모별로 보면, '다소 강제적' 이상은 대기업의 경우 4.6%, 중소기업의 경우 1.9%의 비중을 보이고,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11.3%로 대기업의 비자발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기부금의 자발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이상에 응답한 기업이 33.3%를 차지하며, '중립적'에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가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두번째로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 발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하지만,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33.5%의 기업이 해당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943억원에 이르고,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으로 응답한 기부금으로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규모는 3,573억원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산출한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앞에서 구한 준조세의 규모에 추가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2조 6,217억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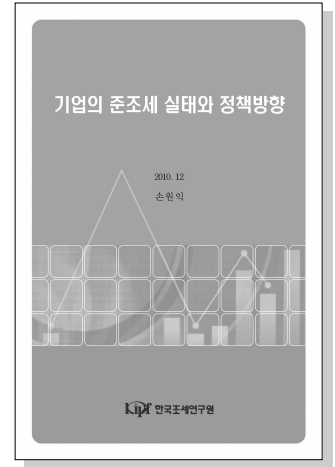
제Ⅱ장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를 조

세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기업이 지는 부담으로 정의하였지만,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의 경우 외부효과의 교정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담으로 분류되고, 사회보험료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또는 유사한 형태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의 규모는 2조 3,822억원 정도이며,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추가하면 전체 규모가 2조 4,765억원 또는 2조 7,395억원에 해당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준조세의 규모에서 제외하고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1조 6,708억원에 이른다. 개인 부담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했을 경우의 32조 6,217억원과 비교하여 약 9,509억원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는 0.09%, 협의의 준조세는 0.02%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 그 변화의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담금 운영이 도입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부담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담금이 상당수 있으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개별 부담금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은 정부가 운영



B5번형/ 179면  
2010. 12


하고 있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담금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 취지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31.3%가 사용되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51.7%가 사용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므로 부담금보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도입 취지를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입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의 취지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부담금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부과대상을 보면, 시설물 사용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경유자동차의 경우도 경유자동



차 사용에 대한 부과가 아니고 소유에 대한 부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추가로 부과방법을 보면, 부담금 도입 취지에서 밝힌 오염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본 부담금은 환경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태섭 외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3월에 결정된 IFRS 도입 로드맵에 의하여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이미 제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회계 측면의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국가의 경험을 자세히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당국 그리고 세무당국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IFRS 도입에 따른 외국의 도입사례에 대한 기존연구는 그 내용이 너무 적어 정책당국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미 IFRS를 도입한 나라에서 세법 그리고 세무행정 측면에서 어떠한 준비과정을 겪었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IFRS의 도입에 따라 주요 외국이 세제 및 세정 측면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심층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IFRS의 도입방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관계 설정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IFRS 도입에 따라 세법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주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개정방안의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IFRS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지,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별도(개별)재무제표에도 IFRS를 적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조건을 고려하여 영국, 호주 그리고 이탈리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에 대하여 IFRS 도입 전후의 세제/세무행정 측면에서의 대응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IFRS 도입에 따라 세법개정을 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세제/세정당국에 제도적인 측면과 규정 측면의 제안으로 나누어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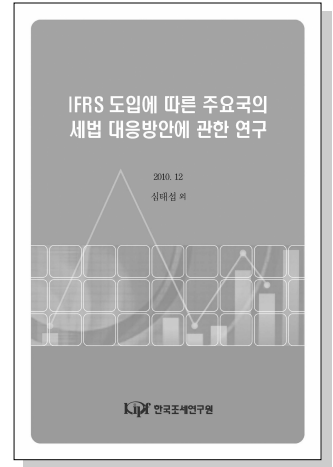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세제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 대원칙 및 세법개정 일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기업에서도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하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세법 변경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영국, 호주나 이탈리아에서도 IFRS하에서의 세법개정 원칙을 조기에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바 있다.

두 번째로, IFRS 도입 전후 관련 전문가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IFRS 도입 전후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노력을 통하여 실제 IFR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인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 가운데 호주의 경우는 IFRS를 도입한 이후에도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유지하여 IFRS 도입에 따른 혼란과 기업의 애로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두 기준간의 차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IFRS 도입 전후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관계를 재정립한 바 있기에, 우리나라 세제당국도 이러한 외국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IFR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세제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IFRS 도입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도입 기업/연도



B5변형/ 301면  
2010. 12

의 특례규정 마련 등 조치로 최초 도입연도의 기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세법규정 측면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시 우리나라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이나 국제경쟁력 등 세법개정에 영향을 받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미 IFRS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세법이나 자국 회계기준(local GAAP)의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IFRS와 자국회계기준(local GAAP)을 동시에 회계기준으로 인정하기에, 세법규정에서도 기존의 자국회계기준(local GAAP)도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호주나 이탈리아의 세법에서는 IFRS 도입으로 새로이 도입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IFRS 규정의 내용을 세법에 도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순응비용 등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IFRS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회계

규정이기에 세법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외에 세법규정이 자국 기업의 대외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존의 규정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IFRS의 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을 할 때, 관련 학계의 연구보고서나 업계에서 제출한 건의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미 IFRS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바, 우리나라 세제당국도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하는 관련 학계와 관련 업계의 건의서나 연구보고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FRS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세제/세정당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의미 있는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동향 11-14

### 요약

- 프랑스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필립 마리니 상원의원은 2011년 6월 22일에 ‘구글세’로 불려졌던 온라인 광고에 관한 조세의 도입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네덜란드의 재무부 장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와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의 VAT 세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 일본은 2011년 6월 22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고용상태에 대응하여 세제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
  - 이 법률안에는 고용 및 환경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의 창설, 외국법인의 일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 소비세관련 조치, 과세특례 연장 조치, 기부세제의 개정 등이 포함됨
- 대만은 2011년 6월 21일 관계기업의 범위 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지침서

### 를 공표함

#### 1. 프랑스의 구글세 도입 계획 철회

- 프랑스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필립 마리니 상원의원은 2011년 6월 22일 ‘구글세’로 불려졌던 온라인 광고에 관한 과세방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구글세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온라인 광고비용에 대해 온라인 광고회사에 1%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구글세는 2010년 12월에 승인된 2011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구글세의 경우 외국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광고회사는 조세회피가 가능하여 실제 세부담은 중소기업 광고회사에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였음
  - 외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광고회사는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구매장소를 외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음
  - 반면, 구글세는 전통적 미디어에서 광고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 광고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프랑스 국가디지털위원회는 지난 5월 구글세가 개인, 기업, 정부의 인터넷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G-8 회의의 결정과 부합하지 않다고 경고함

공급에 포함함

## 2. 네덜란드,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관한 VAT 규정 개정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와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의 VAT 세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 이는 2011년 6월 1일에 Haarlem시 하급법원(lower court)의 친환경 차량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VAT의 세제혜택은 차별적이라는 결정으로 인함
  - 새로운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관련 VAT 세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대한 사업자(entrepreneur)와 직원(employee)에게 적용되는 VAT 세제가 다름
  - 사업자 :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은 차량 가격에 따라 고정된 VAT 세율이 적용됨
    - 세율은 차량가격에 따라 5%, 11%, 25%, 35%로 고정되어 있음
    - 개인적으로 운행한 거리가 500km에 미달할 경우에는 VAT를 과세하지 않음
  - 직원 : 차량의 가격에 따라 VAT가 고정되나 친환경 차량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함
    - 일반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25%, 35%의 세율을 적용함
    - 친환경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5%, 11%의 세율을 적용함
    - 개인적으로 운행한 거리가 500km에 미달할 경우에는 VAT를 과세하지 않음
    - 종업원이 출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개인적

- 개정안에 의하면, 회사 차량의 개인적 공급에 관한 VAT 세제는 사업자와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VAT 세율이 적용됨
  - 즉, 사업자와 직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차량의 실제 가격에 표준세율인 19%를 적용하여 과세함
  - 한편, 개정안에서도 종업원이 출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개인적 공급에 포함함

## 3. 일본의 세제개정 조치

- 일본은 2011년 6월 22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고용상태에 대응하여 세제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하고 공포·시행함
    - 이 법률은 2011년 6월 30일 공포되고 시행됨
    - 동 법률은 2011년 세제개정법안과는 별도로 세제정책을 확충하고 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별조치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임
    - 법인세율 5% 인하 등이 포함된 2011년 세제개정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임
  - 이 법률에는 고용 및 환경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의 창설, 기부세제의 확충, 금융·증권세제의 개정, 조세특별조치의 연장 등이 포함됨
- 가. 고용 및 환경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의 창설
- 고용촉진세제는 근로자의 추가고용을 한 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 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한 근로자



의 고용시기가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여야 함

- 세액공제 금액은 증가되는 근로자 표준인원당 200,000엔으로 계산됨
- 공제한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중소기업은 20%)임

■ 환경관련 투자촉진세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청색신고 외국법인이 특별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청색신고 외국법인이 2011년 6월 22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환경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한다면 기계 및 장비 취득금액의 30%를 특별상각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도로 하여 기계 및 장비 취득액에 대하여 7%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외국법인의 일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

■ SZIS(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 Strategy)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적격법인인 특별상각 등의 세제 혜택이나 각종 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법인이 2011년 6월 22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SZIS에서 제공되는 비지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설치한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취득 및 설치금액의 50%를 특별상각(건물에 대해서는 25%)하거나 그 취득 및 설치금액의 15%를 세액공제(건물에 대해서는 8%)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제한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20%임

- 법인이 2011년 6월 22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SZIS에서 승인된 비지정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승인일 후 5년간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음

다. 소비세관련 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재의 과세면제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의 기준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임
- 법인사업자의 기준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의 전전 사업연도임

-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전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매출액, 법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 6개월에 대한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이상이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과세면제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매출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매입소비세 100%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자의 과세매출 비율이 95% 이상이면 매입소비세를 100%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액이 5억엔 이상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라. 과세특례조치의 연장

■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조치를 연장함

- 개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2011

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이 규정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조치를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8%로 하는 조세특례 조치를 2012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중소기업은 과세소득이 800백만원 이하인 법인임

마. 기부세제의 개정

- 지정된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적격기부를 한 개인은 2,000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40%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제한도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5%임

바. 개정을 논의 중인 주요 세제 조치

- 2011년 세제개정법안은 국회에서 현재 심의되고 있는데, 심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 인하, 가속상각의 감소, 근로소득공제의 제한, 상속세의 공제한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법인세 관련 개정 논의사항은 유효법인세율을 약 5% 포인트 인하, 이월공제를 80%로 제한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9년으로 연장, 초기의 가속상각을 감소,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임
- 소득세 관련 개정 논의사항은 근로소득공제의 제한, 성인 부양가족공제의 폐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자격부여 규정의 개정임
- 상속세 관련 개정 논의사항은 상속세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상속세율을 재설계하는 것임

4. 대만의 과소자본세제 개정

- 대만의 재경부는 2011년 6월 21일에 관계기업의 범위에 대한 정의 등을 포함하는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지침서를 공표함
- 과소자본세제는 영리기업(profit seeking enterprise, PSE)의 관계기업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중 정해진 부채/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무목적상 공제하지 않는 제도임
  -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이자비용은 이월공제로 사용되거나 배당으로 재편되지 못함
- 지침서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데, 영리기업에는 자회사나 외국회사의 대만지점을 포함함
  - 부채/자본비율은 일반적으로는 3:1로 이 비율은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산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배제함
    - 금융업은 은행, 금융지주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포함됨
  - 관계기업에 대한 정의는 대만 이전가격지침을 따르도록 함
    - 이전가격지침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18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직·간접비율, 실질적 경영권이나 통제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총부채(covered debt)는 관계기업의 부채, 관계기업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준비된 비관계기업의 부채, 관계기업으로부터 지출한 자금을 의한 기타부채도



포함되지만,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에는 부채에서 제외됨

- 영리기업의 수익, 이자비용이나 과세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이자가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구입과 관련되어 자본화된 경우
- 이자가 토지의 구입과 관련되어 자본화되거나 매매 목적 토지의 구입과 관련하여 이연된 비용으로 분류된 경우
- 부채 중 재경부가 승인한 부채인 경우
- 과세당국이 이자비용에 대한 이전가격조정을 했다 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부채/자본비율은 재조정되어야 함
- 공제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관계기업의 이자비용  $\times [1 - (3/(\text{부채/지분}))]$ 의 산식으로 계산됨

동향 11-15

요약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는 2011년 6월 30일에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된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단계 축소(9단계 초과누진세율에서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및 세율인하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구간 변경임
-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미등록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자진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노르웨이는 2011년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음. 수정 예산안에서는 계좌 유지,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제한, 파트너십의 비과세 요건의 내용을 수정·추가함

1. 중국의 개인소득세제 개정조치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sup>1)</sup>는 2011년 6월 30일에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번 개정은 제6차 소득세법 개정임

1)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약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상무위원회는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수정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

- 개정된 소득세법의 주요내용은 월표준공제액의 인상,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구간의 축소(9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 근로소득 최저 과세구간 세율의 인하(5%에서 3%로 인하), 사업소득 과세구간 금액 인상이며, 원천징수일도 연장함
- 원천징수일은 소득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이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로 연장됨
- 이번 법률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 납세자 및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납세자는 현재 8,400만명인 납세자가 2,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가. 월별 근로소득 세율체계

- 개정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월별 근로소득 과세액에 따라 7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게 됨
- 새로운 세율체계는 최저 3%에서 최대 45%로 7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지님

〈표 1〉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단계 (단위: 위안)

기존 과세체계			새로운 과세체계		
단계	월과세소득	세율	단계	월과세소득	세율
1	500 이하	5%	1	1,500 이하	3%
2	500 초과 2,000까지	10%	2	1,500 초과 4,500까지	10%
3	2,000 초과 5,000까지	15%	3	4,500 초과 9,000까지	20%
4	5,000 초과 20,000까지	20%	4	9,000 초과 35,000까지	25%
5	20,000 초과 40,000까지	25%	5	35,000 초과 55,000까지	30%
6	40,000 초과 60,000까지	30%	6	55,000 초과 80,000까지	35%
7	60,000 초과 80,000까지	35%	7	80,000 초과	45%
8	80,000 초과 100,000까지	40%			
9	100,000 초과	45%			

- 월과세소득은 월총소득에서 3,500위안(과세면제한도)과 추가공제(extra deduction)를 차감하여 계산함
- 추가공제(extra deduction)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에서 근무하는 중국거주자에게 적용됨

나. 연간 개인사업소득의 세율체계

- 개인이 제조업이나 다른 사업활동(개인사업자, 파트너십의 개인 파트너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연단위의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과세됨
- 연단위의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익에서 연간 원가, 비용과 손실을 공제하여 계산됨
-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소득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5%에서 35%)을 유지하지만 과세구간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낮아지게 됨

〈표 2〉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단위: 위안)

기존 과세체계			새로운 과세체계		
단계	연과세소득	세율	단계	연과세소득	세율
1	5,000 이하	5%	1	15,000이하	5%
2	5,000 초과 10,000까지	10%	2	15,000 초과 30,000까지	10%
3	10,000 초과 30,000까지	20%	3	30,000 초과 60,000까지	20%
4	30,000 초과 50,000까지	30%	4	60,000 초과 100,000까지	30%
5	50,000 초과	35%	5	100,000 초과	35%

2. 영국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자진 등록 프로그램

-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미등록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자진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수주 내로 4만 여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자진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메일을 발송할 예정임

■ 영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직전 12개월간 매출 합계액이 면세점인 £73,000를 초과하거나 30일 이내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registration) 해야 함<sup>2)</sup>

- 이전에 면세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기업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형태로 인수한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음

■ 중소기업 사업자 중에서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가 다수 존재함

■ 영국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가 9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함
-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부과함
- 현 부가가치세법상 지연 등록(late registration)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지연 등록시 지연납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라 다른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가산세율은 10%를 상회함

〈표 3〉 영국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지연 등록 가산세율 (단위: %)

사업자 등록 의무 발생시점으로부터 경과한 기간	가산세율
9개월 미만	5%
9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0%
18개월 초과	15%

주: 1. 가산세율은 납부세액에 대한 비율임  
 2. 최소 가산세 금액은 £50임  
 자료: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 사업자가 등록 의무를 알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최고 납부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진 등록 프로그램 종료 이후 미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임

### 3. 노르웨이 2011년 수정 예산안

- 계좌 유지 규정,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제한, 파트너십의 비과세 요건의 내용이 수정·추가된 노르웨이 2011년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
- 네덜란드 정부가 2011년 5월 13일 의회에 제출한 수정 예산안이 2011년 6월 17일 의회를 통과함
- 수정 예산안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유효함

<sup>2)</sup> 사업자 등록의 기준금액은 우리나라와 달리 물가연동을 하기 때문에 매 회계연도마다 변경되고 있음

- 수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과 비교하여 유럽경제연합(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 국가로의 이전시 계좌 유지 규정,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제한, 파트너십의 비과세 요건의 내용이 수정·추가됨

가. EEA 국가로의 이전시 계좌 유지 규정

- 노르웨이 납세자가 EEA 국가로 이전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임
  - 개정 전 노르웨이 납세자는 EEA 국가로 이전시 보유하고 있던 계좌를 폐지해야 하며, 계좌 잔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었음
  - 계좌 유지 규정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납세자가 이전하고자 하는 EEA 국가의 납세자가 되어야 하고
    - ② 납세자가 이전하고자 하는 EEA 국가와 노르웨이 간 납세협력의무 조항이 포함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제한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추가됨
  - 명문 규정의 도입으로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조세전략(tax planning)을 규제할 수 있게 됨

다. 파트너십의 비과세 요건

- 파트너십 주가가치의 90% 이상이 EEA 역내 기업의 주식인 경우,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 달성한 자본이익 또는 손실은 비과세 또는 손금불산입됨

• 이를 ‘90% 요건(the 90% Requirement)’이라 함

- 90% 요건에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이 요건을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해 옴
  - 자본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EEA 역외 기업의 주식에 10% 이상 투자하여 자본손실을 손금산입받음
  - 자본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다시 90% 요건을 충족시켜 자본이익을 비과세함

-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보유요건을 신설함
  - 90% 요건이 최근 2년간 충족되어야만 자본이득 또는 손실의 과세처리 변경이 가능함
    - 즉, 자본이득 또는 손실에 대해 비과세 또는 손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90%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이를 과세하거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90% 요건이 불충족되어야 함
  - 납세자가 과세기간마다 자의적으로 과세요건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됨



## | 정책 흐름 |

- 과일 및 채소류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
-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 지방세 범칙행위자 처벌 수준 및 절차, 국세 수준으로 정비

# 과일 및 채소류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등에 대한 관세 인하

- 할당관세 신규 적용(4개), 물량 증량(1개), 세율 추가 인하(3개) -

\* 본 자료는 2011년 8월 2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에서 발표한 「과일 및 채소류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등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운용계획)** 정부는 작황부진, 구제역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등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 \* 할당관세: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 돼지고기(냉장 가공육)에 대해서는 할당물량을 증량하며, 매니옥 칩, 맥아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세율을 추가 인하할 계획

### 할당관세 품목(8개) 운용내용

신규적용(4)	바나나(30 → 할0%), 파인애플(30 → 할0%), 배추(27 → 할0%), 무(30 → 할0%)
기존(4)	물량 확대(1) 돼지고기(냉장가공육 '11. 9월 말까지 수입전량, 22.5 → 할0%)
	추가 인하(3) 매니옥 칩(할5 → 할0%), 맥주맥(할15 → 할0%), 맥아(할12 → 할0%)

- **(적용대상)** 수급애로가 예상되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확대
  - (과일류) 장마피해, 작황부진 등으로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우려되는 국내 과실에 대한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바나나, 파인애플에 무관세 적용
  - (채소류) 계속된 강우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배추 및 무를 무관세로 도입

- (냉장 돼지고기)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 원료육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냉장 가공육의 할당물량을 '11. 9. 30일까지 수입전량으로 확대
- (주류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주의 주원료인 매니옥 칩, 맥주의 원재료인 맥주맥과 맥아의 할당세율을 0%로 추가 인하

- **(적용기간)** 신규 품목인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의 경우 국내 가을 채소 및 과일이 출하되기 전인 '11. 9. 30일까지 할당관세 부과
- 일시적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냉장 돼지고기(가공육)는 '11. 9.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추가 세율인하 3개 품목은 '11. 12. 31일까지 운용

-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할당관세 규정안은 8.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
- 금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

참고 금번 할당관세 운용내용

품 목	관세율(%)			'10년 수입 량 (톤)	한계수량 (톤)	적용기간
	기본	실행	할당			
신규 (4개)	바나나	30	30	0	337,907	수입전량 '11. 9. 30
	파인애플	30	30	0	60,565	수입전량 '11. 9. 30
	배추	27	27	0	13,565	수입전량 '11. 9. 30
	무	30	30	0	6,117	수입전량 '11. 9. 30
증량 (1개)	돼지고기 (냉장 가공육)	22.5	할0	0	4,655	수입전량 '11. 9. 30
세율 인하 (3개)*	매니옥 칩	20	할5	0	40,273	100,000 '11. 12. 31
	맥주맥	30	할15	0	12,750	30,250 '11. 12. 31
	맥아	30	할12	0	155,982	207,000 '11. 12. 31

\* 매니옥 칩, 맥주맥 및 맥아의 한계수량은 '11. 1. 1일부터 적용받는 수량

#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

\* 본 자료는 2011년 8월 1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금년 4월 중국은 희토류 자원세를 10~20배 상향 조정하는 등 자원과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주요국의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

## I. 검토 배경

- 저유가시대에 각국은 경제논리로 에너지 자원을 상업자산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원을 '전략자산'으로 인식
- 자원보유국은 이를 통해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외교섭력을 확장하는 한편, 국제질서 재편 등을 도모

예)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10. 9) 실시

- 중국,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은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 확대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바, 중국/호주 등을 중심으로 자원세 부과 현황 및 향후계획을 검토

## 주요국의 자원통제 조치

국가	내용
중국	철강 원재료에 대한 가공무역 수출금지('07), 희토류 신규 채굴금지('10. 3.), 수출쿼터제 도입('10. 7.), 수출관세 부과('10. 12.) 등
호주	광물 임대세 부과 결정('10. 7)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가즈프롬)에 PNG, LNG 독점권 부여 및 정부지분 확대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회사 설립, 가스·석유 탐사 및 적유사업 총괄
베네수엘라	자원 국유화 선언('06. 4.)
볼리비아	자원 국유화법 제정('06. 5.)
에콰도르	석유회사의 예상외수익에 대한 자원세 50% 의회 가결('06)

## II. 주요국의 자원세 개편 내용 및 영향

### 1 중국

- 1984년 자원세 도입 이후 징수범위 확대, 징수방식 개혁, 과세수준 상향 조정 등 실시
-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지방 재정수입 확대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세수부담이 낮아 자원 부족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 '11년 상반기 자원세 징수액은 총 307.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하여 서부지역에서 실

시한 자원세 개혁\*의 효과 입증

\*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 목적으로 신장성 등 12개 성의 원유·천연가스 등에 증가세(5%) 부과

-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 자원세를 10~20배 상향 조정('11. 4. 1)
  - 종전에는 희토류가 “기타 비철금속 원광” 항목으로 분류되어 톤당 3위안의 자원세가 부과되었으나, 상향 조정 이후 경희토류는 톤당 60위안, 중희토류는 톤당 30위안 부과
- 자원세 부과대상 지역 및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자원세 개혁안이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
  - 부과방식은 종량징액세에서 종가정률세로 전환하고, 과세품목을 원유와 천연가스 외에 기타 자원으로 확대하며 대상지역도 전국 범위로 확대
    - 원유·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고, 석탄은 기존의 종량세 부과원칙을 유지하되, 종량 징수 정액을 소폭 상향 조정(톤당 0.3~5위안 → 0.3~8위안)
  -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우려

2 호주

- 호주 정부는 일부 석유자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산액 비례 과세제도를 시행중이나 재정수지 개선, 자원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세계개편 추진
- 시장변동에 따른 세수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원이익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인프라 확충 등 유도
- '12.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

(MRRT, Mineral Resources Rent Tax)’ 제도를 도입할 계획

- 자원세 징수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성하여 도로, 철도, 항구, 전력공급망 등 인프라 건설과 법인세 인하에 사용
  - \* 호주 Gillard 총리는 당초 대비 대폭 완화된 세계개편안에 광산업계(BHP, Rio Tinto, Xstrata 3사)와 합의한 바, 통과시 '12. 7. 1일 발효 예정
- 철광석,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p 이상 상회할 경우 이익의 30%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천연가스는 40% 세율을 적용
- 신규개편안은 기존안 대비 적용 대상 광물 및 적용 세율이 축소되었으나, 호주 광산업체들은 현재 30% 수준의 법인세 외에 추가로 자원세까지 부담
  - \* 2010년 Rudd 총리는 법인세 외에 40%의 천연자원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뒤 호주 광산업계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임
- 본 법안이 발효될 경우 최초 2년간 77억호주달러의 세수증가 예상

3 중남미

- 2000년 이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자원 보유국들은 자국 국영기업의 석유자산 지분 증대, 외국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등 新자원민족주의 정책 추진
- 베네수엘라는 '05년 탄화수소법을 개정하여 로열티를 16.6%에서 33.3%로, 법인세는 34%에서 50%로 대폭 인상
- 볼리비아는 '06년 천연가스 1일 평균생산량이 1억 cf\*를 초과할 경우 이윤의 82%(종전 50%)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 \* 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cf는 석유 0.178205 배럴에 해당

- 에콰도르는 '07년 OPEC에 재가입하고, 석유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석유생산에 따른 초과수익의 50%를 회수
  - '08년에는 초과이윤세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 최근 광물자원 가격의 급등으로 중남미 광물자원 보유국 정부 역시 자원개발기업의 수익 환원을 요구
- 칠레는 '10년 10월, 칠레 지진 복구 자금 확보 차원에서 '광업 로열티법'을 개정하여 과세 기준을 강화
  - 법개정으로 연간 판매량 5만톤(구리환산톤) 이상의 광산업체 로열티가 영업이익의 4%에서 4~9%('10~'12년), 최대 14%('18년 이후)까지 증가할 전망

### III. 전망 및 시사점

- **(재정수지 개선)** 자원세 개편으로 호주 재정수지 및 중국 지방재정수지 개선이 예상
  - 호주의 경우 자원세를 통한 세수증대는 도모하되, '13년 회계연도부터는 법인세를 인하할 예정이며 중국은 소비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가능성 제기
- **(자원개발 투자)** 중국, 호주 등 자원세를 인상한 국가에 진출한 자원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시현될 경우 해외 자원개발 투자 위축 가능성
  - 다만, 자원개발 투자 위축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자원세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자원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 호주 철광석/석탄, 중국 희토류/비철금속 등 자원가격 상승으로 수입국의 생산비 증대
  - 호주는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으로 우

리는 호주로부터 전체 광물 수입액의 30% 이상을 수입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6%,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국가로 한국은 對중국 희토류 수입 및 對일본 반제품, 완성품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한국은 LCD, LED 등 첨단 IT 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제품 생산과 수출에 영향
- **(원자재 장벽 강화)** 중국 및 호주의 자원세제 개편 방향이 지속 강화될 경우 세계적으로 새로운 갈등 야기 가능성
  -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원자재 수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이를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수출하는 장려책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원자재 관련 갈등 지속

- **(안정적 자원확보 전략 마련)** 주요국의 자원세 동향이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가격 및 공급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원자재 수급 대책 마련
  - 해외자원 직접투자 확대 및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의 의존도를 낮추어 법/제도 변경 리스크 완화
  - 정부 차원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통해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 조성

\* 자원보유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ODA 지원 등

참고 1 중국 자원세 연혁

연도	내 용	목 적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세 징수 시작</li> <li>•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만 세금 납부대상</li> <li>• 초과이윤율에 따라 영업이익률의 12% 이상 부분에 대해 징수</li> </ul>	지역별 자원 분포 및 광물별 매장량에 따른 기업 이윤 분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중국 자원세 조례&gt; 실시 이후, 징수 범위가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 철금속, 비철금속, 염류 등 7가지 품목으로 확대</li> <li>• 징수방법은 광산품의 매출량에 따라 징수(종량정액제)</li> </ul>	전국적인 세무개혁을 계기로 자원세 징수방법 합리화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서, 청해, 내몽골, 산서 등 5개 성 석탄 세율 상향조정</li> </ul>	탄광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성이 떨어진 영세 탄광을 폐광시키는 등 석탄 업종 구조 조정의 일환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 세율 개혁이 12개 성으로 확대</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특별 수익금” 추가 징수 (배럴당 40달러 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해 세금 징수)</li> <li>• 호북, 호남 등 13개 성의 석탄 세율 상향 조정</li> </ul>	사회의 부(富)가 일부 자원 업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부터 납, 아연, 구리, 텅스텐 세율 상향조정(세율 3~6배 상승)</li> <li>• 접결탄 세율을 톤당 8위안으로 인상</li> <li>• 고급 아연과 은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li> </ul>	해당 산업의 생산과잉 억제, 경제산업 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차원의 고려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 천연가스): 신장(新疆)을 비롯한 서부 12개 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매출량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방법(종량정액제)에서 가격에 의해 징수하는 방법(증가정률제)으로 전환</li> <li>• 세율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효과, 서부 대개발 건설 자금 마련</li> <li>• 일부 기업의 “싼 값으로 자원을 수출”하는 행위 억제</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중국 자원세 조례&gt; 수정본 제정</li> <li>•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 ‘증가정률’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 세율은 5%에서 5~10%로 인상</li> <li>• (석탄) 톤당 0.3~5위안에서 0.3~8위안으로 인상</li> <li>• (희토류) 자원세 10배 이상 인상 (4월1일)</li> <li>• 물, 금 등 자원도 세금 징수 대상에 포함(미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매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이며 현실에 맞지 않음</li> <li>• 부족한 희귀 자원 보호(물, 금, 희토류 등)</li> </ul>

참고 2 기타 국가 자원세 현황

지역	국 가	세 율
중남미	브 라 질	0.2~3% (광종별 차등적용)
	칠 레	0.5~14% (판매량 차등적용)
	페 루	1~3% (광종별 차등적용)
	아 르헨티나	21~31.5% (로열티)
	볼 리비아	25%
	콜 롬비아	4~6% (상세 세목별 상이)
아시아	인 도	0.2~20% (광종별 차등적용)
	러 시아	3.8~8% (광종별 차등적용)
	카자흐스탄	채굴세 1.5~20%, 증가세 0~32%, 초과이윤세 0~60% 등

##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본 자료는 2011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에서 발표한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가 '10년도 예산사업(38개 부처, 482개 사업, 51.3조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33개 사업은 '우수' 이상으로, 132개 사업은 '미흡' 이하로 평가되었음

### 평가등급별 사업 비중

평가대상연도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09년도	26개(4.7%)	393개(71.2%)	132개(24.1%)
'10년도	33개(6.8%)	317개(65.8%)	132개(27.4%)

- 전년도 평가와 비교하면 '우수' 이상 사업 수는 늘어나고 '미흡' 이하 사업 수는 동일하나, 평가대상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2.1%p, 3.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공통 평가지표 수 축소, 관리단계 배점 상향 조정, 부분점수제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 수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 금년 성과평가지에는 관리단계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 사업관리·감독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앙부처의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최종 사업수행기관의 실적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사실상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가 배정되었는지 점검하였고,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내용·방식의 적정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였음

- 계획, 관리, 성과·환류의 단계별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계획이 92점, 성과계획이 70.1점, 관리가 65.9점, 성과·환류는 55.1점으로 나타남

### 평가단계별 점수(100점 만점 기준)

총점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환류
62.7	92.0	70.1	65.9	55.1

- 계획단계는 각 부처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합리적 설정 노력이 다소 미흡하여 성과계획 점수가 사업계획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관리단계는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최종 사업수행기관의 실적행 수준 등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측정기준 세분화(2단계 → 4단계)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였음
- 성과·환류단계는 상당수의 사업들이 달성 용이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따라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에도 평가점수를 낮게 받아 단계별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사업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 (산림청), ‘노인 일자리 지원’ (복지부) 등 33개 사업임
- ‘미흡’ 이하로 평가된 사업은 132개 사업이며, 주요 요인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부적절, 저조한 예산집행률, 성과미달성 등으로 분석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류해 나갈 계획임
- 우선,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각 부처의 ‘1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완하여’ 12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자율평가의 중요 요소인 성과지표 및 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부처 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참고 1** '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개선사항

- ① 공통 평가지표 수 축소(12개 → 10개)
  -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지표 간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

'09년도 공통평가지표		'10년도 공통평가지표		
계 획 (30)	1-1. 사업목적 명확성(5)	→	1-1. 사업목적 명확성 및 효율성(5)	계 획 (20)
	1-2. 유사·중복 여부(5)		1-2. 유사·중복 여부(5)	
	1-3. 사업추진방식 효율성(5)			
관 리 (20)	2-1. 성과지표의 명확한 연계성(7.5)	→	2-1. 성과지표의 명확한 연계성(5)	관 리 (30)
	2-2. 목표치의 합리성(7.5)		2-2. 목표치의 합리성(5)	
	3-1. 예산 집행 적절성 여부(5)		3-1. 예산 집행 적절성 여부(15)	
성 과 (50)	3-2.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10)	→	3-2.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10)	성 과 (50)
	3-3. 사업평가 실시 여부(5)		3-3. 효율성 제고 여부(5)	
	4-1.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30)		4-1.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30)	
	4-2. 사업평가 결과, 효과성 여부(5)	→	4-2. 사업평가 실시 및 효과성 여부(10)	
	4-3. 효율성 제고 여부(5)	→		
	4-4. 외부지적사항 등 환류 여부(10)	→	4-3. 외부지적사항 등 환류 여부(10)	

\* 괄호 안 숫자는 평가지표 배점

- ② 관리단계 평가배점 상향 조정(20점 → 30점)
  - 계획단계 배점을 축소(30점 → 20점)하고 관리단계 배점을 늘려 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낮은 평가점수를 받도록 유도
- ③ 답변 단계 세분화를 통한 부분점수제 도입 확대
  - 집행 난이도 고려, 예산절감 노력 정도, 외부 지적 사항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할 때 ‘예’, ‘아니요’로 답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예’, ‘어느 정도’, ‘아니요’ 등 단계를 세분화하여 부분점수 부여

평가지표	'09년 기준	'10년 기준
3-1. 예산 집행 적절성 여부	‘예’, ‘아니요’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3-3. 효율성 제고 여부	‘예’, ‘아니요’	‘예’, ‘어느 정도’, ‘아니요’
4-3. 외부지적사항 등 환류 여부	‘예’, ‘아니요’	‘예’, ‘어느 정도’, ‘아니요’

**참고 2** 우수사업 예시

사업명(부처, '10예산)	평가결과(요약)
산림재해 방지 (산림청, 67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li> <li>소나무재선충병 피해본수, 일반 병해충 피해면적 등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높은 성과지표 및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li> <li>법·제도 정비 및 현장형 방제체제 구축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li> <li>그 결과 '57년 산림병해충 통계 이래 피해면적 최소화 달성</li> </ul>
노인 일자리 지원 (복지부, 1,51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보급 지원</li> <li>창출된 일자리 수, 장기 취업 성공률 등을 성과지표로 선정 및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분기별로 충실히 이행</li> <li>종합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에 활용</li> </ul>
투자유치 기반 조성 (지경부, 77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외국인학교 건립, 투자유치 활동비 등 지원</li> <li>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위축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치를 설정</li> <li>적극적인 해외 IR 수행, 투자국 특성별 맞춤 프로젝트 밀착 지원 등을 통해 최근 10년간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액 증가 달성</li> </ul>
국립박물관 운영 (문화부, 44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박물관의 전시, 유물 수집,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li> <li>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미정리 유물 등록 수 등의 성과지표별로 합리적·의욕적 목표치 설정 및 달성</li> <li>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관람객의 수요와 특성을 파악하여 차기 전시에 반영</li> </ul>
농산물 안전성 관리 (농림부, 35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산물 원산지 관리 등 지원</li> <li>농약 잔류조사 부적합률, 원산지표시 이행을 등의 성과지표를 선정,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달성함</li> <li>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내산 농산물 수요증가 등을 통해 농가수입 증대에 기여</li> </ul>

**참고 3** 미흡사업 예시

사업명(부처, '10예산)	평가결과(요약)
신재생에너지단지 (지경부, 1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에너지 성능평가,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 복합단지조성 지원</li> <li>성과지표인 공정률 목표치가 성과계획서상에는 100%, 자율평가 보고서상에는 72%로 상이하고, 실적은 58%에 불과</li> <li>실집행실적('08 : 0.5%, '09 : 37.5%, '10 : 54.9%)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10년도 사업에 산은 전액 이월처리됨</li> </ul>
국립대구과학관건립 (교과부, 29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광역시 종합과학관 건립 지원</li> <li>연례적 실적행 실적('08 : 36.9%, '09 : 67.1%, '10 : 66.8%)이 저조하여 성과지표로 설정한 공정률이 목표치 대비 70% 수준에 불과함</li> </ul>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국토부, 4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li> <li>'10년 실적행실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며, 그 결과 성과지표로 설정한 공정률지표도 미달성</li> </ul>
내수면어업 (농림부, 3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면가공시설, 토종종묘보급사업, 내수면인공 산란장 지원</li> <li>사업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실적행 실적('09 : 22.7%, '10 : 40.5%)이 매우 저조하고 연례적 이월 발생</li> </ul>
보육시설지원 (복지부, 55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지원</li> <li>예산 전용 및 분기별 집행계획 미준수 등 집행상 문제가 있으며, 사업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사업평가 미실시</li> </ul>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 조성 (환경부, 17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성장 비전 체험관 건립, 환경교육 등 녹색성장 실천 지원</li> <li>사업목적이 모호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보다는 지자체의 단발성 행사를 지원하는 등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낮음</li> <li>환경교육, 녹색생활확산 선도사업 지원을 통해 나타난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 노력 미흡</li> </ul>

**참고 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요

■ 주요 내용

- **(개념)**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하여 재정부에 활용하는 제도('05년부터 시행)
- **(근거)**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대상사업)** 각 부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1/3을 선정, 선정된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과제를 모두 평가(단,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11년 평가대상 사업 : 총 482개(일반재정 389개·정보화 93개)

- **(평가지표)** 계획, 관리, 성과/환류로 구분되며 10개 공통지표 및 사업 유형별 1~2개의 특성지표로 구성
- **(평가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5단계 등급화

* 5 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 평가과정 및 일정

- 평가지침 사전 통보(재정부 → 각 부처, 전년도 말) →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각 부처 → 재정부, 1~3월) → 확인·점검을 통해 최종 평가결과 산출 및 공개(재정부, 4~7월)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미흡’ 이하 등급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 평가 도래 연도까지 10% 이상 삭감

\* 성과지표 개선 등 성과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평가주기(3년) 미도래시에도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 재조정 가능

#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본 자료는 2011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에서 발표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30%)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2011. 7. 27 ~ 2011. 8. 16)
-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하여 13개 품목을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13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 (13개 신규품목 추가) 제철·정유공정 오염물질 저감용 물품(8개), 수질개선용품(2개), 폐기물처리 용품(3개) 등 13개 품목 추가
- (13개 기존품목 제외) 국내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이미 국내도입을 완료하여 추가적 수입이 불필요한 13개 품목을 제외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방지 및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8월중 공포·시행될 예정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1년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계획에 따른 정비기준에 맞추어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감면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하였음

### 참고 1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

#### 1 개요

- 환경오염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 감면 근거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호 및 제2호

#### 2 제도 내용

- (감면 대상자)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 포함)
- (감면율) 해당 관세액의 30%
- (일몰기한) 2011. 12. 31(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 (관세감면 신청절차) 환경부 장관이 신청인 및 품목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관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2의3에서 정함

3 감면실적

(단위: 개, 억원)

연 도	'06	'07	'08	'09	'10
품목 수	113	113	115	113	49
감면액	135	260	190	250	79

참고 2 품목조정 현황

■ 총괄

	현행	개정	신규	재지정	제외
◇ 합 계	49	49	13	36	13
•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33	41	10	31	2
• 폐기물 처리물품	16	8	3	5	11

■ 신규품목(13개)

구분	품명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10)	증류탑(정류탑) 또는 포집탑, 분산제어시스템, 액면(압력)스위치, 압력센서, 가스배송기, 응축기, 슬라이드 밸브, 익스펜전조인트, 연속반응식 인제거 모래여과기, 흡착용 담체
폐기물처리물품 (3)	유기물 혼합기, 고액분리기, 부상선별기

■ 재지정(규격변경 포함) 품목(36개)

구분	품명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31)	액체펌프, 가스청정기, 열교환기(냉각기), 영구자석, 배기온도센서, 밸브, 여과기(여과막), 밀도류 확산장치, 반응기, 디스트리뷰터, 증류탑(정류탑)의 단, 가스발생기, 송풍기, 기체압축기, 로딩암, 담체(필터), 알루미늄파우치, 분사펌프, 분사노즐, 냉각수 밸브, 레졸버, 전류센서, 리드탭, 머플러 어세이, 녹스센서, 온도자동조정기, 엔진제어장치, 전자식 점화 제어장치, 분사 제어장치, 삼상분리기(분배기), 변압기
폐기물처리물품 (5)	혼합 폐합성수지 압축가열 성형기(큐버), 폐형광등(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설비, 폐기를 원형 압축포장기, 풍력 선별기, 퇴비 뒤집개

■ 제외품목 (13개)

구분	품명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2)	액화천연가스연료용기, 과급기
폐기물처리물품 (11)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폴리염화비페닐 처리기, 교반기, 펠릿제조기, 파쇄기(분쇄기), 우드칩 파쇄기, 발리스틱 선별기, 디스크 선별기, 전력공급장치, 플라스마 가열설비, 플라스마 토치

# 지방세 범칙행위자 처벌 수준 및 절차, 국세 수준으로 정비

##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본 자료는 2011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지방세 범칙행위자 처벌 수준 및 절차, 국세 수준으로 정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번 개편안은 지난 3. 31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직접 두지 않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불공정성도 문제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탈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과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였다.

### 주요 처벌규정 내용

범칙행위	처벌내용 (지방세기본법안 조문)	비고(현행)
조세포탈	2년 이하 징역, 포탈액 2배이하 벌금(\$129)	좌동
특별징수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31)	좌동
체납처분 면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130)	조세범 처벌법 준용 (\$134)
장부의 소각·파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30의2)	
성실신고방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30의3)	
명의대여행위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30의4)	
명령사항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131의3)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면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듯한 심리적 박탈감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의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참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1**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 신설(안 제9장제2절 신설)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금품 공여, 명령위반 등 지방세법 처벌조항을 직접 규정

- 체납처분 면탈(안 제130조)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탈루, 거짓계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장부의 소각·파기 등(안 제130조의2)
  - 지방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실신고 방해(안 제130조의3)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31조의2)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는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 \*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벌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안 제131조의3)
  - 압류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2**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규정 신설(안 제9장제3절 신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사 후 추징금 납부통고, 고발 등 지방세법 처벌 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안 제133조의2)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함
- 압수·수색영장(안 제133조의3)
  -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시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음
- 심문조서의 작성(안 제133조의5)
  -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야 함
- 보고 및 즉시고발(안 제133조의8)
  -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범칙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고발
- 통고처분(안 제133조의9)
  -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될 때는 벌금 및 추징금, 서류송달 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납부토록 통지
- 기타 규정
  -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규정 준용(안 제133조의4)
  - 범칙사건 조사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133조의7)
  - 통고처분시 공소시효 중단(안 제133조의10), 통고처분 이행시 일사부재리 적용(안 제133조의11)

### ③ 기타 제도개선 사항

지방세제 운영을 효율화·선진화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

- 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 위탁 확대(안 제68조제3항)
    -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 확대
      - ☞ (현재) 자동차세 → (개선) 모든 지방세목
  -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제도 개선(안 제146조제3항)
    - 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11~'12년 :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 '13년 : 0.015%

## 2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소득세 체납 축소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무서의 자치단체 과세자료 통보의 범위 확대 및 통보기간 단축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범위 확대(안 제97조제1항 및 제2항)
  - 현재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에 한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법인세분 자료(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사항)도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지방세법) 마련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간 단축(안 제97조제3항 및 제4항)
  - 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경정과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지한 경우 그 내용의 통보 기한을 현행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

-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결정·경정 자료는 별도 근거 없이 실무상 '그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통보하고 있으나, 이를 '다음 달 15일'로 단축



# | 재정통계 |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 특별회계 규모 추이

1.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948	24,292	884	24,292	1,685
1949	196,695	128,840	194,263	124,801
1950	372,902	270,831	372,887	260,312
1951	1,576,007	1,342,732	1,576,007	1,291,932
1952	55,496	50,707	55,496	47,842
1953	170,826	144,836	170,826	137,830
1954	487,183	318,264	487,183	296,025
1955	1,071,665	852,193	1,071,665	728,261
1957	969,614	994,043	969,614	776,958
1958	780,850	855,124	780,850	686,260
1959	631,050	672,448	631,050	598,282
1960	643,733	690,464	643,733	540,074
1961	725,849	643,574	725,849	564,602
1962	98,241	86,409	94,599	80,147
1963	112,943	112,518	112,943	106,548
1964	127,822	120,562	127,822	112,367
1965	142,452	138,175	142,452	130,133
1966	224,281	216,695	224,281	208,632
1967	267,507	260,963	267,507	243,205
1968	364,174	338,662	364,174	327,505
1969	530,521	520,514	530,521	503,761
1970	486,013	482,810	543,559	458,814
1971	611,263	570,247	611,263	549,331
1972	797,695	768,797	797,695	744,133
1973	769,132	770,118	769,132	734,225
1974	1,024,114	1,050,376	1,024,114	989,096
1975	1,742,055	1,750,013	1,742,055	1,686,340
1976	2,227,460	2,172,899	2,227,460	2,068,929
1977	1,922,642	1,936,189	1,922,642	1,821,613
1978	2,397,190	2,375,498	2,397,190	2,282,018
1979	3,165,977	3,033,403	3,165,977	2,927,548
1980	4,454,901	4,308,815	4,454,899	4,207,953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981	6,157,906	5,587,095	6,157,906	5,458,413
1982	5,223,652	4,972,444	5,223,652	4,779,254
1983	5,786,901	5,101,673	5,786,901	4,977,139
1984	6,253,984	6,184,450	6,253,984	5,954,767
1985	6,316,157	6,325,621	6,316,157	6,059,993
1986	7,210,059	7,148,388	7,210,059	6,957,714
1987	7,630,203	5,357,124	7,630,203	5,155,889
1988	7,732,205	7,251,065	7,732,205	7,046,945
1989	11,419,196	11,487,053	11,419,196	10,949,347
1990	11,773,144	11,830,349	11,773,144	11,046,124
1991	15,283,507	15,790,798	15,283,507	14,713,736
1992	18,588,647	18,270,263	18,588,647	17,089,803
1993	23,962,283	24,196,006	23,962,283	22,303,818
1994	34,309,365	35,720,658	34,309,365	32,489,095
1995	40,600,119	42,437,038	40,600,119	38,132,456
1996	45,611,326	48,251,141	45,611,326	43,559,004
1997	50,692,231	51,162,263	50,692,231	46,567,390
1998	58,911,011	57,925,699	58,911,011	54,232,417
1999	64,840,375	65,704,456	64,840,375	61,670,624
2000	67,775,242	69,090,655	67,775,242	64,787,524
2001	66,065,991	66,931,766	66,065,991	63,070,213
2002	67,817,458	70,003,866	67,817,458	64,365,806
2003	73,767,021	75,673,933	73,767,021	70,780,828
2004	67,759,406	68,500,343	67,759,406	64,958,241
2005	60,625,656	61,329,006	60,625,656	58,192,145
2006	57,252,021	58,344,083	57,252,021	56,042,575
2007	44,434,225	44,863,314	44,434,225	42,573,799
2008	48,632,185	50,589,855	48,632,185	47,424,018
2009	52,974,955	56,395,020	52,974,955	52,306,469
2010	54,050,930	55,995,840	54,050,930	51,516,256

자료: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통계자료』, 제3집, 196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2. 특별회계 규모 추이<sup>1)</sup>

구 분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	전매사업	통신사업	교통(철도)사업	우체국예금 <sup>2)</sup>	우편사업 <sup>2)</sup>	조달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책임운영기관	기타특별회계	외자 <sup>3)</sup>
1948 <sup>3)</sup>	-	-	-	-	-			-	-		17	8
1949	675	-	327	34	312			-	2		574	419
1950	1,942	1,131	266	63	480			-	2		661	470
1951	6,035	3,147	1,810	131	942			-	5		6,885	3,119
1952	18,537	9,508	6,202	447	2,366			-	14		29,305	1,565
1953	37,958	22,177	9,562	1,023	5,155			-	41		99,872	2,940
1954	68,806	34,014	18,080	2,747	13,861			-	104		227,218	5,243
1955	170,256	75,064	49,211	9,517	36,143			-	321		558,006	13,118
1957	189,387	90,483	49,483	11,418	37,665			-	338		587,572	13,789
1958	202,587	76,978	55,495	14,288	55,407			-	419		483,674	12,940
1959	204,037	59,225	62,826	18,929	62,380			-	677		394,245	10,541
1960	205,802	49,928	66,310	22,870	65,912			-	782		334,272	7,465
1961	242	72	77	60	26			6	1		323	
1962	287	110	54	72	31			18	2		515	
1963	546	138	174	150	58			23	3		522	
1964	645	179	201	133	97			31	4		478	
1965	735	160	245	173	108			43	6		567	
1966	1,164	283	335	272	214			49	11		922	
1967	1,318	273	436	331	257			3	18		1,114	
1968	1,768	345	624	437	336			2	24		1,506	
1969	2,524	760	837	458	423			5	41		2,514	
1970	2,023	13	1,016	433	504			7	50		2,566	
1971	2,534	14	1,317	531	594			9	69		2,960	
1972	3,178	20	1,615	667	774			9	93		4,264	
1973	3,763	26	2,077	643	891			11	115		3,578	
1974	5,410	24	2,763	1,042	1,411			18	152		4,481	
1975	8,583	30	4,480	1,566	2,297			29	181		8,278	
1976	10,792	39	5,621	2,020	3,010			31	71		9,900	
1977 <sup>3)</sup>	13,164	47	6,869	2,433	3,771			44			5,053	
1978	17,103	65	9,080	2,835	5,062			61			5,718	
1979	21,260	74	11,120	3,899	6,042			125			8,016	
1980	31,332	86	15,038	4,881	11,123			204			10,746	
1981	40,378	109	19,188	5,404	15,467			210			14,206	
1982	31,186	118	21,752	6,655	2,446			215			16,608	
1983	33,016	118	23,163	6,898	2,571			266			16,756	
1984	34,603	115	23,326	7,813	3,118			231			24,946	
1985	35,748	120	23,567	8,507	3,387			167			24,852	
1986	41,217	126	27,208	9,109	4,590			184			28,360	
1987	21,106	168	5,739	9,817	5,184			198			30,452	
1988	17,101	160		6,273	10,425			243			53,368	
1989	18,708	172		6,841	11,443			252			90,784	
1990	21,072	192		7,954	12,637			289			89,388	
1991	26,659	224		9,542	16,496			397			120,479	
1992	31,550	253		11,209	19,511			577			139,348	
1993	34,757	262		12,896	20,745			854			188,281	
1994	64,263	27,161		15,795	20,202			1,105			260,628	
1995	59,843	17,275		18,525	23,188			854			317,558	
1996	65,045	14,734		21,711	27,474			1,126			364,584	
1997	77,520	14,839		27,098	34,359			1,223			380,736	
1998	78,342	12,837		30,731	33,576			1,199			455,135	
1999	82,043	12,483		34,732	33,456			1,372			525,350	
2000	88,686	11,397		34,139	38,740			1,981		2,430	548,986	
2001	102,845	11,241		39,487	45,941			1,271		4,904	527,857	
2002	114,556	12,726		42,316	52,532			1,372		5,610	517,097	
2003	127,642	15,787		42,317	61,966			1,153		6,420	580,166	
2004	112,035	14,703		42,244	46,977			1,420		6,691	537,547	
2005	67,580	11,476		48,390				1,303		6,412	514,342	
2006	69,574	12,822		48,904				2,127		5,720	490,852	
2007	71,655	12,485				18,085	29,410	2,000		9,675	354,083	
2008	74,310	12,438				20,819	30,634	2,150		8,269	399,930	
2009	80,509	13,448				24,266	31,700	2,927		8,168	442,556	
2010	78,882	11,976				22,679	32,769	3,356		8,102	436,281	



2. 특별회계 규모 추이<sup>1)</sup> (계속)

구 분	대우자금	산업부흥국책금	전관수습비	경제부흥	국방비	공무원연금	국토건설사업	부정축재처리 자금	정부보유외국환 관리	재정자금운용	원혼 <sup>2)</sup>	교도작업
1948 <sup>3)</sup>	-	-										
1949	-	-										
1950	-	-										
1951	-	-										
1952	-	-										
1953	5,085	5,000										
1954	99,371	12,878	76,148	7,460	-	-						
1955	338,511	19,297	-	40,245	106,379	-						
1957	303,129	29,517	-	86,275	112,462	-						
1958	369,096	-	-	78,521	-	-						
1959	302,957	-	-	59,457	-	-						
1960	245,633	-	-	47,633	-	4,529						
1961	226			35		10	39	2	-	-	-	-
1962	308			44		14	40	14	-	24	46	1
1963	255			145		19	-	4	-	60	24	1
1964	254			117		12	-	6	-	54	24	1
1965	284			172		14	-	7	-	48	27	2
1966	319			290		16	-	-	-	151	32	2
1967	292			335		21	-	-	-	216	40	3
1968	272			579		37	-	-	-	195	53	3
1969	204			782		53				487	66	4
1970	165			919		91				398	73	5
1971	109			1,087		97				525	88	5
1972	31			1,728		117				460	111	6
1973	-			1,160		160				426	101	10
1974	-			2,740		140				-	117	13
1975	-			4,945		154				-	158	16
1976	-			6,110		397				-	232	22
1977 <sup>4)</sup>						452					341	31
1978						606					424	37
1979						732					521	48
1980						1,233					672	57
1981						1,827					830	66
1982						2,464					-	64
1983						-					-	80
1984						-					-	97
1985						-					-	109
1986						-					-	116
1987						-					-	101
1988												106
1989												111
1990												113
1991												125
1992												143
1993												174
1994												202
1995												228
1996												229
1997												237
1998												246
1999												261
2000												271
2001												275
2002												336
2003												340
2004												334
2005												347
2006												316
2007												357
2008												311
2009												344
2010												320



2. 특별회계 규모 추이<sup>1)</sup> (계속)

구 분	정부청사조정	정부청사시설	국립의료원	도로정비사업	도로사업	군인연금	사법시설	서울대학교시설 확충	항공기정비	국립대학교	국립중추장관리	재정용자 <sup>2)</sup>
1948 <sup>3)</sup>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1961	-		-	-		-	-					
1962	-		-	-		-	-					
1963	-		-	-		-	-					
1964	-		-	-		7	-					
1965	-		-	-		6	-					
1966	-		-	-		10	-					
1967	2		-	-		15	-					
1968	10		3	129		19	11					
1969	20		5	316		22	19	5	-	16	-	
1970	18		6	304		43	23	12	-	20	3	
1971	9		8	251		55	31	14	-	26	3	
1972	8		9	356		72	31	19	-	33	3	
1973	7		10	420		87	34	43	-	37	4	
1974	15		13	375		93	24	56	1	51	7	
1975	21		18	571		94	32	36	1	71	7	
1976	-		24	561		155	49	17	1	125	9	
1977 <sup>4)</sup>			32			237	118					3,296
1978			42			317	148					3,386
1979			52			396	244					5,081
1980			76			660	310					6,611
1981			124			922	445					8,643
1982			145			1,204	465					10,511
1983			162			1,395	601					12,355
1984			133			1,444	592					20,063
1985			155			1,711	619					18,958
1986			169			2,121	861					20,694
1987			185			2,367	1,027					22,351
1988			192			2,790	1,140					43,680
1989			218		9,131	3,228	1,083					70,183
1990			249		12,306	3,886	1,090					58,378
1991			305		13,544	4,494	1,335					62,107
1992			355		18,119	5,776	1,939					47,971
1993		189	403		20,664	6,773	1,994					87,434
1994			463			7,289						107,686
1995			466			8,300						111,840
1996			455			8,857						118,752
1997			475			8,562						103,341
1998			466			9,342						152,070
1999			486			10,014						191,176
2000			476			10,429						207,899
2001			521			11,139						162,601
2002			533			12,124						169,240
2003			566			14,214						181,038
2004			616			15,210						147,160
2005			586			16,076						142,304
2006			621			16,743						100,020
2007												
2008												
2009												
2010												



2. 특별회계 규모 추이<sup>1)</sup>

(단위: 1948~60년 백만원, 1961년 이후 억원, %)

구 분	지방양여금관리	지방교육양여금 관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도시철도사업	특허관리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sup>2)</sup>	혁신도시건설 <sup>3)</sup>	환경개선	합 계
1948 <sup>2)</sup>											17
1949											1,249
1950											2,603
1951											12,920
1952											47,842
1953											137,830
1954											296,024
1955											728,262
1957											776,959
1958											686,261
1959											598,282
1960											540,074
1961											565
1962											802
1963											1,068
1964											1,123
1965											1,302
1966											2,086
1967											2,432
1968											3,274
1969											5,038
1970											4,589
1971											5,494
1972											7,442
1973											7,341
1974											9,891
1975											16,861
1976											20,692
1977 <sup>2)</sup>											18,217
1978											22,821
1979											29,276
1980											42,078
1981											54,584
1982											47,794
1983											49,772
1984											59,549
1985											60,600
1986											69,577
1987											51,558
1988							114				70,469
1989							170				109,492
1990							182				110,460
1991	5,250	13,418		734		2,100	225				147,138
1992	11,842	17,733		1,826		2,500	236				170,898
1993	12,850	20,761		2,276	473	3,802	261				223,038
1994	17,702	25,774		3,637	692		307				324,891
1995	21,336	29,124	14,276	4,079	764		394		3,924		377,401
1996	24,056	35,228	16,816	3,483	917		513		5,960		429,630
1997	25,388	44,600	19,258	3,828	683		644		7,418		458,255
1998	29,457	48,201	20,523	2,803	738		811		8,847		533,478
1999	35,108	48,073	19,933	1,794	804		839		9,313		607,394
2000	36,422	50,578	19,206	1,977	252		1,302		10,203		637,672
2001	40,879	39,477	23,086	2,654	1,231		1,488		11,531		630,702
2002	39,752	31,493	22,309	1,962	3,653		1,714		12,004		631,653
2003	43,360	36,598	23,572	2,907	10,001		1,664		12,680		707,808
2004	45,445	38,636	22,141	3,265	6,537		1,832		12,544		649,582
2005	4,123		25,383		6,211		2,213		25,263		581,921
2006			30,074		4,973		2,865	196		27,251	560,426
2007			38,061					685		28,836	425,738
2008			55,342					3,261	1,107	30,250	474,240
2009			36,902					5,282	1,616	39,903	523,065
2010			43,821					3,670	4,564	39,289	515,163

- 주: 1) 세출결산 총계기준  
 2) 1948년도는 6개월분  
 3) 외자는 1948~49년에 감시외자총국특별회계  
 4) 관재정은 1948~49년에 감시관재총국특별회계  
 5) 교통사업, 경제부흥특별회계는 1962년도에 폐지되고 1963년도부터 철도사업, 경제개발특별회계로 개편  
 6) 체신사업특별회계는 1961년도에 폐지되고 1962년도부터는 통신사업특별회계로 개편  
 7) 군사원호특별회계는 1962년도에 폐지되고 1963년도부터 원호특별회계로 개편  
 8) 1977년 증가율은 1977년 중 자금관리특별회계가 통합 신설되어 파악 곤란  
 9) '87년 이전은 자금관리 특별회계  
 10) '94년부터 4개 특별회계(국유임야관리, 군용시설, 사법시설, 정부청사)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통합  
 11) '94년 개편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였음  
 12) '94년부터 2개 특별회계(도로사업, 도시철도)를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통합  
 13) 주한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가 2006년 신설  
 14) 국방군사시설 이전,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특별회계가 2007년 신설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한신도시건설 특별회계가 2008년 신설  
 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5년 신설되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2010년 명칭변경
- 자료: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통계자료』, 제3집, 1961.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경제기획원, 『예산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각 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시론] 자본에 대한 ‘따뜻한 과세’**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금 자본주의는 세계화를 통해 거의 전세계를 아우르는 경제체제로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본의 소수집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자본주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현상이기 때문이다.

◆ 주식·파생상품 차이 과세를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겪었던 자본주의의 문제점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 의존해온 결과 자본의 집중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본을 가진 소수야말로 세계화를 통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세계화의 진전이 결과적으로 부의 집중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본의 속성상 따뜻한 자본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반대로 인간사회인 만큼 냉혹한 자본주의가 무한히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괴리를 메워주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하나가 조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에 상당한 조세부담을 지우면 사회적 간극을 메우는 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이 가장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본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여기에 조세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자본의 이동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자본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세부담 경감이 저축이나 투자의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자본이득을 포함한 광의의 자본소득에 대해 근본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을 일부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식양도차익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다. 주식시장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는 없다. 아직 소득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우리나라와 대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염려된다면 점진적인 접근방법으로 현행 대주주 범위의 기준금액을 낮춰 과세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물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해 파생금융상품에 의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생금융상품은 헤지라

는 본연의 기능이 있고 어느 정도의 투기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 점진적 추진으로 충격 줄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일부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헤지와 괴리가 있다. 유동성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세계적 시장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계속 어떤 종류의 세금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가 현물시장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종류의 유동성은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이외에 시장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게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도박산업도 나름의 수익구조와 고용효과가 있겠지만 바람직한 사회현상이라고 강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경제 오피니언 2011-7-27일자)

“오너지분 3% 넘으면 증여세…2004년부터 소급 검토”

대기업 오너 일가가 3~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일감을 30% 이상 몰아주는 대기업과 일감을 받는 수혜 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4일 한국조세연구원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과 과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다.

5일 조세연구원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기 하루 전에 발표한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5가지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5가지 과세 방안은 그동안 재정

부가 검토해 온 방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단수, 혹은 복수의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과세방안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물량 몰아주기로 주가가 오르면 늘어난 시가총액과 주식 보유비율을 고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글로벌비처럼 주가 급등으로 대주주가 이득을 보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가는 전체 증시 흐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기업에 불리하고, 주가 하락 시 기업들이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주가와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 것이 장점이다. 반면 기업 영업이익과 대주주 개인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수혜 기업 영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방법도 제시됐다. 현재 외국 기업에 대해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 설계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는 데 따른 논쟁이 불가피하다.

수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도 있다. 비상업용 부동산에 법인세를 추과 과세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배주주와 관계 없는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모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 시 손금을 제외하는 방법이다. 손금이 적을수록 법인세 과세액이 커진다. 다만 이는 일감을 몰아준 데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격이 된다.

이들 방법은 대부분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근거가 되는 정상 거래가격을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특정 이익에 대해 증여나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어떤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 교수는 “물량 몰아주기는 사실상 변칙적인 부의 대 물림 수단이 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2004년 이후 지속돼 온 기업들의 편 법 증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채 법 시행일 이후에만 과세방안을 적용하면 애초 취지인 공정과세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급 입법 시 위헌 가능성이 있어 재정부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2011-8-5일자)

### IDB · 조세연구, 공공투자 국제세미나 개최

미주개발은행(IDB)과 조세연구원은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공투자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남미 12개국의 차관과 실장급 고위 공무원과 IDB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의 공공투자 관리 현황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공공투자의 역할과 공공투자 관리체계, 대규모 공공사업 관리·감독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를 후원하는 기획재정부는 “중남미 국가들과 공공투자 관련 협력을 통해 재정분야의 국제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1-8-8일자)

###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해야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양도세 증가제도 폐지와 함께 허용하는 것이 시장 상황에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세 증가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됨에 따라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제도가 납세자 간에 잠재적인 과세불공평을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세 폐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폐지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증가제도는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은 2012년 말까지 연장돼 현행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다. 단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3구 소재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10% 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양도세 증가제도 폐지가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소시켜 세수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부자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증가제도를 폐지하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은 부동산 가격 급등보다는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 임

대가격 상승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편 결과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해 전·월세 가격만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게도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보유기간이 다르더라도 양도세가 같다면 보유기간이 긴 납세자는 실질가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택 장기 보유를 권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07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연합뉴스 2011-8-10일자〉

### 개인사업자 탈루소득 年 30조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모(52)씨는 자신이 근무한 지방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고가(高價)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을 잇달아 맡았다. 하지만 이씨는 사건수임 약정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일부만 신고하며 6억원의 소득을 탈루(脫漏)했다.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혀 3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실제 소득의 60%에 불과하다. 나머지 40%는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가져간다는 얘기가.

글로벌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자본주의 3.0)

에서 손쉽게 소득을 빼돌리기 위해 탈세(脫稅)라는 불법적인 반칙행위가 스스로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는 사업가들이 사용하는 공공연한 수단이다. 조세연구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탈루한 사업소득 규모가 2008년 기준 3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1000조원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금액이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연간 급여액 25조4284억원보다 4조5000억원 이상 많다. 여기에는 법인사업자의 탈루 규모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업가들이 숨긴 소득을 찾아내고 세금을 거두는 일이 해마다 숨바꼭질 처럼 반복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매년 2조~3조원에 달한다.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에서 연간 4000억~5000억원의 세금을 토해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꾸준히 늘면서 세원(稅源)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 지금도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이들이 소득을 숨겨서 내지 않는 세금의 대부분은 봉급 생활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자본주의 4.0 시대에서는 번 만큼 세금도 안 내고 소득을 빼돌리는 반칙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안중범 성균관대 교수는 “유리알 지갑인 근로자와의 과세(課稅) 형평을 위해 사업자들의 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엔 탈세를 안 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1-8-11일자〉

# 재정포럼

2011년 8월호 통권 제182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 월간 재정포럼

2011년 8월 16일 발행 / 제15권 제8호(통권 제18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